
2026년 저탄소 친환경 축산시책 추진계획

2025. 12.

일 리 두 기

1. 본 자료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친환경 축산 추진방향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요령을 축종(분야)별로 수록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그 외 기관 소관사업은 해당 기관에서 배포한 실시요령을 참조
2.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보조금 지원사업 패널티 및 인센티브(자체사업에 한함)
 - ❖ 동일인이 개인 사업장과 법인체 등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대상만 지원 금지(농축협은 해당사업장에 한함)
 - ※ 부정수급 규모별 지원제한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 준용
 - ❖ 축산·수의, 가축분뇨 관련 법률 위반으로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회째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단, 재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방지의 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 후 지원 가능
 - ❖ 허가(신고)없이 초지 내 농작물 재배 등 타용도 사용농가는 행위 확인서 징구일 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 지원 제외
 -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축산 인증, 저탄소축산물 인증, 육종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 지정,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 2025년 축산환경개선교육 이수, ICT 약취측정(모니터링) 시설·장비 설치, 화재 지킴이 설치, 2024년 및 2025년 전기안전점검 참여, E2마커 백신접종 등을 이행한 사업장에는 축산사업 인센티브 적용

- ❖ 무허가 축사(배출시설) 보유 사업장은 동일 목적의 신규 시설 또는 증축, 무허가 축사 내 부속시설 등 해당 무허가 축사의 확대, 지속 존치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지원 제외
 - 단, 무허가 축사(배출시설)를 폐쇄하고 신규로 설치 및 양성화하거나 무허가 축사와 부속되지 않는 장비 및 부대설비, 가축전염병 예방, 재해복구, 축산물 수급안정, 축산환경(분뇨적정처리·냄새저감) 개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 하여야 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 ❖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 미흡(소 80%이하, 번식돈·염소 60%이하, 비육돈 30%이하) 농가는 2년간 지원 제외
 - 단, 백신 일제 접종 후 추가 확인검사에서 전국평균 이상 항체양성률 확인 시 지원 가능

4. 본 계획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문서로 조치함.

5. 기타사항

- ❖ 보조사업자 선정시 법인 산하 사업장 명칭으로 선정을 지양하고 법인 대표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권고사항)
 - 예)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장장 한라산
→제주축산업협동조합(축산물공판장) 조합장 백두산
- ❖ 본 계획에는 행정시별로 기 자체 공고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별 신청기한이 일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 신청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2026. 1. 16.(금)까지 도·행정시(청정축산과)로 신청
- ❖ 사업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심사기준 마련하여 심사 평가 후 선정
-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 ❖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검증,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기계장비, 물품 등은 지원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함.

목 차

I.	일반현황	9
II.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0
III.	국내외 축산업 여건	12
IV.	2026년 저탄소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계획	15
V.	분야별 투자계획	17
VI.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25

한우산업 육성

1.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29
2.	한(흑)우 경진대회 개최	30
3.	한우 선진 사양기술 교류	31
4.	한국축산학회 국제학술대회	32
5.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34
6.	한우 생산성 향상	36
7.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지원	38
8.	한(흑)우 등록	39
9.	한(흑)우 인공수정료	41
10.	한우 수정란 이식	42
11.	저능력 한우암소 도태	43
12.	한우 유전체 분석	44
13.	한우 친자확인	45
14.	한우 초음파 진단료	46
15.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	48
16.	한우 도외출하 운송비	49
17.	한우 비육우 도외출하 도축 수수료	50
18.	한우 비육우 품질고급화	51
19.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52
20.	한우 사육환경 개선	53
21.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54

22.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55
23. 소 보정틀 및 환풍기	57
24. 암소비육 전문기술 습득	58
25. 조사료 절단기	59
26. 배합사료 물류비	60
27. 가축재해 보험료	61
28. FTA대응 흑우 출하	63
29. 흑우 소득직불금	64
30. 고품질 흑우 생산(인증점 인센티브)	66
31. 고품질 흑우 생산(흑우 홍보)	67
32. 고품질 흑우 생산(저능력우 도태)	68
33.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	69
34. 제주흑우 송아지생산 장려	70
35.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71

낙농산업 육성

1. 젖소 성감별정액 보급	75
2. 소규모 낙농가 경영안정	76
3. 수입개방 대응 제주산 유제품 가공	77
4. 유가공장 자동설비	78
5. 다품종 유제품 AI기반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79
6. 제주산 유제품 홍보 판촉	80
7.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운송비	81
8. 학교우유급식 가정배송	82
9. 학교 우유급식	83
10. 젖소 혈통등록	85
11. 고능력 유전형질 젖소 정액 보급	86
12. 낙농시설 현대화	87
13. 원유 유질개선	88
14. 착유시설 세척제	89

말산업 육성

1. 도지사배 대상경주	93
2. 탐라배 대상경주	94
3. 우수 씨수말 도입	95
4. 제주마 종마 구입	97
5. 제주마 경매	99
6. 제주 경주 조기퇴역마 지원	100
7. 우수 제주마 유통 장려금	101
8. 제주산 마필 조련	102
9. 민간승마대회	103
10. 학생승마체험(학교체육)	104
11.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105
12. 에코힐링마로 유지보수	106
13.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107
14.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112
15.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113
16. 제주마 축제	114
17. 말산업 과제발굴 토론회	115
18. 헌마공신 정신계승 및 말산업진흥 진흥 심포지엄	116
19. 김만일기념관 위탁 운영관리	117
20. 제주 말 문화유산 활용 및 가치창출	118
21. 경주마 X-ray 진단비	119
22.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 등록비	120
23.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121
24.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22
25. 농촌관광 승마활성화(트레킹)	123
26. 학생 승마체험	124
27. 유소년 승마단 지원	126
28. 제주 승마교실 운영	127
29.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	128
30.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129
31.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130
32. 승용마 조련강화	131
33. 승용마 거점 조련시설	132
34.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134
35. 말 사육환경 개선	135
36. 말 연관제품 소비확대 홍보	136
37. 제주 말산업거점 기반 농가역량 강화	137
38. 제주 의귀 말 축제	138

양돈산업 육성

1.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141
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42
3. 축사시설 현대화	143
4. 기후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	144
5. 기후변화대응 축산농가 기자재 및 시설	145
6. 양돈장 화재예방 시설	146

양계 가금산업 육성

1. 도계장 시설 보완	149
2. 도계장 폐기물 처리	150
3.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151
4. 가금농가 시설현대화	152
5. 고품질 계란 생산	153

양봉 곤충 기타가축

1.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	157
2.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	158
3. 양봉 입식	159
4. 종봉생산 개량(화분구입)	160
5. 전면 소초광	162
6. 양봉 생산 기자재	164
7. 말벌 퇴치장비	166
8.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167
9. 우수 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169
10. 기후위기 대응 양봉 저온저장고	170
11.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인센티브	172
12. 토종벌꿀 명품화	173
13. 곤충 사료화 지원	174
14. 제주 곤충산물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	175
15. 미래 친환경자원 곤충 산업화	176
16. 곤충산업화 지원	177
17. 곤충산업 시민인식 확산 시범	178
18. 기타가축농가 시설장비	179
19. 기타가축(양계, 젖소 등) 시설·장비	180

축산물 유통 활성화

1.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183
2. 도축장 노후 위생시설 개선	184
3. 도축 폐기물 감량화('25 이월)	185
4. 제주 도새기축제	186
5. 축산분야 RE100 인증확대 장려금	187
6. 축산분야 RE100 인증시설	188
7. 제주산 축산물 홍보	189
8. 축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판매	190
9.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191
10. 축산물 유통안전화를 위한 냉장운반 특장 차량	192
11. 가금류 가공 유통 시설개선	193
12. 한우브랜드 포장재	194

가축분뇨·냄새 관리

1.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197
2.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199
3.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201
4.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203
5.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204
6. 커피박 활용 악취저감·친환경 시범	206
7.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환경 모델 조성	207
8.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진단 및 컨설팅(비예산)	208
9. 가축분뇨처리 지원	209
1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210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11
1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경영안정화	212
1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	213
14.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214
15. 액비저장조 설치	215
16.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216
17. 축산환경 개선	218
18.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220
19.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221

(조)사료 생산 이용

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225
2. 마을공동목장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 조사	226
3.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228
4.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230
5.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231
6. 조사료 물류비	233
7. 조사료 생산농가 기계장비	234
8.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	235
9. TMR 사료배합기	236
10.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237
11.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238

축산생명연구원 운영

1. 한(흑)우 개량 및 제주흑우 보호 육성	241
2. 고능력 청정 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공급	247
3. 마필 산업 육성	260
4.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264
5.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기술보급 시범	267
VII. 보조금 신청서 등 각종 서식	275
VIII. 축산관련 기관 단체	295

I

일반현황

※ 2024년 말 기준이며, 2026년 현황은 말산업 실태조사 등 일부통계가 확정 발표되는 2026. 5월 확정 예정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사업체) 5,288개소 (농가 2,745, 축협 등 기타사업체 2,543)
- (종사자) 15,853명

가축 사육

(단위: 호, 마리, 군)

구 분	축 우			젖소	돼지	닭	말	양봉	염소
	소계	한우	육우						
호수	673	645	28	31	258	89	1,101	439	44
두수	39,257	38,456	801	4,149	519,209	1,860,177	14,936	56,678	3,937

- 출처: 행정통계자료(읍면동 전수조사), 말산업실태조사결과('24년)

※ 농가당: 한(육)우 58마리, 젖소 134마리, 돼지 2,020마리, 닭 20,901마리, 말 13마리, 양봉 129군, 염소 89마리

목장 및 초지

- (목장) 73개소 (관영 3, 전기업 20, 마을공동 50)
- (초지) 15,392ha (방목초지 5,728, 사료작물 5,124 기타 4,540)
- ※ 전국 초지 31,596ha의 48.7% 점유

축산물작업장 및 사료공장 등

- (도축·집유장) 7개소 (도축장 2, 닭 도축장 2, 집유장 3)
- (사료공장) 5개소 (배합사료 3, 섬유질사료 2) ※ 단미사료업체 122개소
- (인증농장) 477개소 (무항생제 81, 동물복지 14, 친환경(유기축산) 8, 깨끗한 축산농장 360, 환경친화축산농장 8, RE100 6)
- (축산물 작업장) 1,229개소 (가공업 63, 포장처리 152, 판매 907, 운반 57, 보관 40, 식용란선별포장 10)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 (공공처리) 2개소, 처리능력 630톤/일(에너지화 230톤/일 포함)
- (공동자원화) 8개소, 처리능력 1,657톤/일(에너지화 125톤/일 포함)
- ※ 공공처리 증설 1개소(150톤) 및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신규 2개소(250톤) 추진중

제주 말산업특구 운영

- 전문인력양성기관 3개소, 말조련 거점센터 2개소, 유소년승마단 10개소 운영
- 체험승마인구 230천명, 말산업 종사자수 2,943명, 비육마 도축 876마리(전국의 73.1%)
- 승마장 62개소, 마로 9개소·92.4km, 말고기 판매인증점 12개소

총 생산액('24년): 1조3,887억원 ['23년 1조3,350억원 대비 4.0%(537억원) 증]

- 한육우 897, 낙농 372, 양돈 4,593, 말 1,846, 가금 817, 양봉 154, 기타 4,669
- 사업장 개소당: 263백만원('23년 253백만원 대비 3.9% 증)

II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 총 평

- 2025년 제주 축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축산물 생산, 환경부담 확대 등 복합적으로 대두되는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
- 이에, “저탄소·디지털 전환 제주축산의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 RE100 등 저탄소 기반 축산 확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환경친화 축산업 혁신 가속화, 지속가능한 제주 말산업 생태계 조성 등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란?

- 2014년 영국의 비영리 국제기구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자율참여 운동

□ 저탄소 RE100축산 확산과 디지털 축산 전환 본격화

- 제주 축산업의 가치상승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위상에 걸맞는 제주 축산의 혁신을 위해 RE100 축산 확산과 메탄저감 사료 보급
 - RE100 축산: ('24년) 1개소^(산란계) → ('25년) 6개소^(산란계 2, 젖소 2, 유가공 2)
 - 메탄저감 사료급여: 38농가·3,020두 (온실가스 감축량 1,123톤CO₂eq)
 - 저탄소축산물 인증 누계: ('24년)15개소 →('25년) 23개소^(한우 5, 젖소 7, 돼지 11)
- 유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AI 기반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개발사업 선정
 - (주)제주우유, '25~'29년(54개월), 총 127억원^(국가직접지원66, 지방비26, 기타35)

□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유치로 제주축산업 위상 강화

- (사)한국축산경영학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개최: '25.7.10.~7.12.
- (사)한국축산학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제주 유치 및 개최 예정
 - '26.7.8.~7.10. ICC 제주, 파르나스호텔제주 일원, 20개국 약 1,000여명

□ **마을공동목장의 가치 평가를 통한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 진행**

- 마을공동목장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 용역
- `25.4.29.~`26.4.28.(12개월), 제주대 산학협력단

□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및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위한 발판 마련**

- 가축분뇨 관리정책 대전환(에너지화 핵심정책) 및 환경부하 경감 정화처리 목표달성
- 공공공동자원화 에너지화 확대: (기존) 2개소555톤/일 → (확대) 4개소805톤*
* `24년 및 `25년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신규(2개소250톤/일) 공모사업 선정되어 추진중
- 정화처리 단계적 목표달성 실적(%): (`21) 49 → (`23) 70 → (`25) 74

□ **스마트 악취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청정축산환경 조성**

- (산·학·연·관 협업) 원팀 구축으로 AIoT 기반 악취저감 신기술 도입
- (기상청 협업) ICT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 농가 모바일 어플 서비스 개발·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행정 경연대회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 깨끗한 축산농장* 및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비율 전국 1위 달성
* 깨끗한 축산농장: 360개소(제주 17%, 전국 8%) ** 환경친화축산농장: 8개소(전국 30개소)
※ `25년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1위, 환경친화 축산농장 사후관리 우수농장 3개소 지정(농식품부)

□ **전국 말산업특구 지자체 운영평가 11년 연속 1위 달성**

- 말산업특구 4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 경기, 경북, 전북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종합점수 93.4점 획득 1위 차지
- 말산업특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상징적 중심지로, 사업의 다양성과
일관성을 높이 평가
- 인센티브 사업 3억, 공모사업 5억원 등 8억원 국비 확보

□ **제주마 레클리스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등 가치 재조명**

- 한국전쟁 7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웅의 귀환, 레클리스” 제작
방영: `25.6월, KBS
- 제주마축제와 연계 레클리스 감사장 전달식 및 제막 퍼포먼스

Ⅲ

국내외 축산업 여건

- **국외 상황(Global Trends) → 전 세계 축산업은 기후·통상·기술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빠르게 재편중**
-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온실가스 규제 확대**
 - 메탄 감축(Global Methane Pledge)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 규제 강화
 - RE100 · 지속가능경영(ESG) 요구 증가로 저탄소 축산체계 요구 심화
 - ※ 'ESG 경영'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
- **식량·사료·에너지 비용의 국제적 변동성 확대**
 -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곡물가격 변동성이 증가되어 사료비 불안정성 확대
 - 글로벌 식량 안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국 중심의 식량 자급률 강화 정책 시행
 - * 국제곡물 가격변동, 국제유가·물류비 상승은 축산 생산비 전반을 압박
- **AI 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 축산기술 도입 가속화**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기술 도입
- **동물 복지 및 윤리적 축산물 수요 증가**
 -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동물 복지 규제 강화 / 소비자는 점차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물에 높은 가치 부여
- **경마산업 성장 둔화 및 레저·힐링·승마 중심의 시장구조 전환**
 - 미국·유럽 등 전통 경마 강국은 경마 고객 감소, 동물복지 논란, 수익성 감소로 전반적 성장세 둔화.
 - 말 복지(welfare), 말-사람 상호작용 프로그램(EAP, therapy riding) 등 승마 · 힐링 · 여가 · 관광형 말산업 비중이 증가

□ **국내 상황(여건) → 한국 축산업도 구조적 전환 요구가 증가하며 시장·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

○ **한·미 / 한·EU FTA 영향 가속으로 축산물 수입개방 심화**

- 미국산 쇠고기 관세 2026년 전면 철폐 → 한우산업 경쟁 압력 증가
- 치즈·유청분말 등 유제품도 무관세 수입,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약화

○ **축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시에 규제강화 및 생산비 상승**

- 대기환경보전법, 축산법, 바이오가스법 등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 사료비는 축산 생산비의 50~60% 차지함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국내 축산업에 직격탄
- 에너지, 인건비 상승으로 ICT·스마트축사 확산 필요성 증가

○ **탄소중립 농업 정책 본격화**

- 농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실천계획 발표하고, 축산분야 메탄 저감 기술·사양기술 보급 추진중
- 축산업에도 RE100, ESG, 탄소직불제 도입 필요성 대두

○ **소비시장 변화**

- 수입육 확대, 소비 패턴 다양화, 비건·대체식품 부상 등 소비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친환경·저탄소·지역먹거리 선호 증가

○ **국외상황과 마찬가지로 경마산업 정체 및 구조조정 압력**

- 경마 매출은 코로나 이후 부분 회복했으나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
- 경마·승마·생산·유통 등 말산업 전체의 수익구조 취약성 부각

○ **승마 인구 증가세 둔화와 말 복지·안전 규제 강화**

- 승마체험·레저승마 인구는 비용 부담, 접근성 문제 등으로 대중화 속도 느리거나 최근에는 정체
- 말 학대 논란 이후 훈련·조련·운영 과정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강화

□ 제주 축산업 → 타 시·도와 다른 지리·환경·산업 구조 특성을 갖고 있어
특화된 여건 변화가 존재

○ 기후·환경적 압력 증가

- 화산섬 특유의 지형·지질·기후로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축산시설 밀집 지역은 악취 문제가 집중되는 특성
- 관광지라는 특성과 축산사업장 주변 거주 이주민 증가는 축산환경 관련 민원과 갈등 정도가 큰 상황

○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고유 가축자원 보유

-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축산 RE100 확산에 적합
- 흑돼지, 흑우, 제주마 등 고유 가축자원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 고부가 상품으로 개발 육성 가능

○ 조사료 생산기반 취약, 사료비 부담 심화

- 초지 면적은 전국의 48.7%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관리되지 않는 초지 증가, 농작물 재배지 등 타용도 전용으로 조사료 생산 활용면적 감소
- 육지부 또는 수입산 조사료 의존으로 생산비 증가 요인

○ 지역사회, 관광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 필요

- 축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동시에 악취 등으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 청정 제주에 대한 도민관심 고조 및 타시도 보다 강화된 규제로 인하여 축산업 위축

○ 국내 최대의 말 생산 중심지이나 관련 인프라 수익성 확보 등 과제

- 국내 경주마 약 80%가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 제주 말산업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승마장 확충, 조련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나, 수익성과 운영 효율 부족 문제

○ 관광과 결합한 말산업 콘텐츠 잠재력

- 말 트래킹, 말 문화 체험, 말 사진·촬영지 관광 등 “제주 자연 + 말” 결합 콘텐츠 경쟁력 큼

분야 핵심과 실행방향

분야 핵심	실행 방향	세부 과제(요약)
단계별 성장 지원과 저탄소 디지털 축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가공, 유통 등 단계별 성장과 안정 지원 ❖ RE100, AI 등 저탄소·디지털 축산 확산으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위상강화와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반, 가공 유통, 소비 확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실행 • 메탄저감 사육방식과 RE100 축산 시책 발굴 확산 • 디지털·AI 기반 스마트 축산 전환 • 사료용 곡물, 에너지, 물류비 등 상승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 • 초지, 공동목장 보존과 활용으로 안정적 축산기반 유지
축산환경의 혁신적 전환으로 환경친화 축산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화, 정화처리 등 가축 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 환경친화 축산 전환을 위한 AIoT 기반 혁신 약취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등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 • 처리단계의 탄소발생 저감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 • AIoT 기반 약취저감 신기술 현장 적용·검증 및 확대 기반 마련 • 농가 자구노력을 통한 깨끗한 축산 농장 및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확대
지속가능한 말산업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산업특구 위상에 걸맞는 승마, 경마, 연관산업 확장 ❖ 경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승마·레저·관광·힐링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말산업 생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산업특구 평가 1위 유지 및 가치창출 확대 • 경마 정체에 대응한 산업구조 다각화 • 말 복지·안전 기준 확립, 사회공헌 강화 • "제주 자연+말" 콘텐츠 고도화·관광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연관 지표별 발전(관리) 목표

세부 지표		단위	연도별 (*P: 예측 또는 목표치)					설정근거	
			'23	'24	'25	'26	~		'30
❖ 가축사육	한우	마리	38,978	38,456	^(P) 37,100	^(P) 38,000	^(P) 40,000	전국 유일 싱가포르 수출개시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 예상
	돼지	마리	543,540	519,209	^(P) 531,000	^(P) 540,000	^(P) 550,000	
	젓소	마리	4,038	4,230	^(P) 4,100	^(P) 4,000	^(P) 3,800	유제품 무관세 수입 증가공장 경영 여건 등 감안시 점차 감소 예상
	말	마리	14,777	14,936	^(P) 14,900	^(P) 14,900	^(P) 15,000	최근5년 평균 사육규모 (14,888두) 소폭 증가 전망
❖ 조수입		억원	13,350	13,887	^(P) 14,300	^(P) 14,720	^(P) 16,550	매년 3% 성장
❖ 인증(누계)	무항생체	개소	82	81	^(P) 81	^(P) 83		^(P) 91	매년 2개소 증가 목표
	유기	개소	8	8	^(P) 8	^(P) 8		^(P) 9	가장 까다로운 인증요건으로 현재 수준 유지 전망
	동물복지	개소	11	12	16	^(P) 18		^(P) 26	매년 2개소 증가 목표
	환경친화	개소	5	5	8	10	^(P) 18	매년 2개소 증가 목표
	깨끗한축산	개소	286	328	360	380	^(P) 460	매년 20개소 증가 목표
	방목생태	개소	5	8	10	^(P) 11		^(P) 15	매년 1개소 증가 목표
	RE100	개소	-	1	6	^(P) 7		^(P) 11	매년 1개소 증가 목표
	저탄소축산물	개소	1	15	23	^(P) 30		^(P) 42	매년 3개소 증가 목표
❖ 저메탄 사료공급		마리	3,000	3,020	^(P) 3,500	^(P) 3,500		^(P) 4,000	
❖ 가축분뇨	정화처리	%	70	72	74	^(P) 75	^(P) 80	2030 축산환경개선 계획
	에너지화	개소	1	2	2	^(P) 4	^(P) 7	민선8기 가축분뇨 관리정책 대전환
❖ 경주지역마 휴양목장		개소	-	1	2	^(P) 3		^(P) 3	
❖ 체험승마인구		천명	231	230	^(P) 230	^(P) 235		^(P) 250	
❖ 승마장		개소	61	62	^(P) 62	^(P) 63		^(P) 65	

V

분야별 투자계획

□ 총괄

(단위: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5년 투자실적(A)		2026년 투자계획(B)						증감 (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계	168개사업	66,464	165개사업	85,734	22,934	41,486	7,948	13,366	
한(혹)우산업육	38개사업	8,640	35개사업	7,078	1,352	4,528		1,198	
낙농산업육	11개사업	1,710	14개사업	6,731	3,492	2,064		1,175	
말산업육성	39개사업	9,157	38개사업	8,968	2,591	4,534		1,843	
양돈산업육	6개사업	5,301	6개사업	6,842	572	912	3,749	1,609	
양계가금산업육	5개사업	362	5개사업	375		240		135	
양봉·곤충·기타가축육성	17개사업	1,995	19개사업	2,564	121	1,697		746	
축산물유통활성화	12개사업	2,590	12개사업	3,656		2,055		1,601	
가축분뇨·냄새관리	23개사업	20,893	20개사업	33,247	10,945	15,075	3,918	3,309	
(조)사료생산이	12개사업	10,629	11개사업	9,650	2,494	5,157	281	1,718	
축산생명연구원	5개사업	5,187	5개사업	6,623	1,367	5,224		32	

※ 천원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환산 조정함에 따라 일부 수치 오차 있을 수 있음

□ 세부사업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5년 투자실적		2026년 투자계획						주관 기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계	168개사업	66,463	165개사업	85,734	22,934	41,486	7,948	13,366	
한(흑)우산업 육성	38개사업	8,640	35개사업	7,078	1,352	4,528		1,198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1개소	77	2개소	132		114		18	도/서귀
한(흑)우 경진대회 개최	1식	142	1식	124		62		62	도
선진 한우사양기술 교류			1식	30		15		15	도
한국축산학회 국제학술대회			1식	100		70		30	도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560두	56	704두	70		70			도
한우 생산성 향상	12개소	546	15개소	534		267		267	도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지원	3,020두	224	3,500두	202		202			도
한(흑)우등록	9,250두	74	8,975두	72		72			행정시
한우 인공수정료	8,186두	123	10,200두	153		153			행정시
한우 수정란 이식	430두	108	361두	90		90			행정시
저능력 한우암소 도태	520두	156	440두	132		132			행정시
한우 유전체 분석	1,150두	22	2,680두	27		27			행정시
한우 친자확인	2,500두	44	1,112두	19		19			행정시
한우 초음파 진단료	2,000두	20	704두	7		7			행정시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	80두	11	135두	18		18			행정시
한우 도외출하 운송비	2,378두	297	2,034두	313		313			행정시
한우 비육우 도외출하 도축 수수료	800두	80	1,000두	100		100			행정시
한우 비육우 품질고급화			1,333두	200		200			행정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25두	3	40두	6	2	2		2	행정시
한우 사육환경개선	7개소	108	6개소	100		60		40	행정시
보들걸 제주한우 사양관리	17개소	304	15개소	212		127		85	행정시
청정한우 사양기반 구축	5개소	113	10개소	133		80		53	행정시
소 보정틀 및 환풍기	3개소	48	2개소	17		10		7	행정시
암소비육 전문기술 습득			1식	14		10		4	행정시
조사료 절단기	5개소	91	2개소	33		20		13	행정시
배합사료 물류비	32,330톤	970	20,001톤	600		600			행정시
가축재해 보험료	5개보험	2,058	5개보험	2,700	1,350	810		540	행정시

(단위: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5년 투자실적		2026년 투자계획						주관 기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FTA대응 흑우 출하	81두	41	200두	36		36			도
흑우 소득직불금	500두	130	500두	130		130			도
고품질 흑우 생산 인증점 인센티브	13개소	156	14개소	190		190			도
고품질 흑우 생산 흑우 홍보	1개소	33	2개소	50		45		5	도
고품질 흑우 생산 저능력우 도태	40두	20	86두	26		26			도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	1식	217	1식	278		250		28	도
제주흑우 송아지생산 장려	150두	150	150두	150		150			행정시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5개소	86	2개소	83		50		33	행정시
한우암소 소비촉진	2회	133							도
송아지 생산안정	300두	3							행정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15개소	25							행정시
보들결 제주한우 홍보	1식	100							행정시
여성 및 축산인 양성교육	1식	20							행정시
제주산 한우 유통 직거래 판매장	2개소	160							행정시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1식	1,692							도
낙농산업 육성	11개사업	1,710	14개사업	6,731	3,492	2,064		1,175	
젖소 성장별정액 보급	1,292두	83	1,008두	76		76			도
소규모 낙농가 경영안정	7개소	54	7개소	49		49			도
수입개방대응 제주산 유제품 가공			3개소	600		300		300	도
유가공장 자동설비	3개소	193	2개소	228		137		91	도
다품종 유제품 A1반 제조공정 최적화			1개소	4,148	2700	700		748	도
제주산 유제품 홍보 판촉	3개소	60	2개소	54		49		5	도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운송비	5개소	79	5개소	67		67			도
학교우유급식 가정배송비	2개소	43	2개소	60		60			도
학교 우유급식	8,545명	1,090	9,963명	1,320	792	528			행정시
젖소 혈통등록	750두	8	500두	5		5			행정시
고능력 유전형질 젖소정액보급	125두	10	250두	20		20			행정시
낙농시설 현대화	4개소	60	4개소	60		36		24	행정시
원유 유질개선	3,000kℓ	30	3,000kℓ	30		30			행정시
착유시설 세척제			500통	15		9		6	행정시

(단위: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5년 투자실적		2026년 투자계획						주관 기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말산업 육성	39개사업	9,157	38개사업	8,968	2,591	4,534		1,843	
도지사배 대상경주	1식	572	1식	348		243		105	도
탐라배 대상경주	1식	855	1식	348		243		105	도
우수씨수말 도입	1두	460	2두	594	297	297			도
제주마 종마구입			1두	160	80	80			도
제주마 경매	1식	5	1식	42		25		17	도
제주경주 조기퇴역마 지원	9두	18	13두	16		16			도
우수제주마 유통장려금	1식	20	120두	120		120			도
제주산 마필 조련	195두	195	176두	176		105		71	도
민간승마대회	9회	629	10회	600	300	300			도
학생승마체험(학교체육)	75명	24	80명	26	8	10		8	도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1개소	1,000	400	400		200	도
एको힐링마로 유지보수	1식	31	1식	30		30			도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385두	59	194두	53		53			도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1식	21	1식	19		17		2	도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3개소	701	2개소	508	254	254			도
제주마 축제	1식	22	1식	18		13		5	도
말산업 과제 발굴 토론회	1식	9	1식	10		10			도
현민시장개승및말업진흥심포엄	1식	45	1식	27		27			도
김만일기념관 위탁 운영관리	1식	228	1식	237		237			도
말 문화유산 활용 및 가치창출			1식	25		25			도
경주마 X-ray진단비	720두	180	520두	130		130			행정시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 등록비	110두	33	80두	24		24			행정시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4개소	78	2개소	58		35		23	행정시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2,568회	385	650회	97	29	29		39	행정시
농촌관광 승마활성화(트레킹)	857회	411	1,521회	403	121	121		161	행정시
학생승마체험	3,050명	893	3,265명	1,125	355	459		311	행정시
유소년 승마단 지원	9개소	268	10개소	272	136	136			행정시
제주승마교실 운영	40명	20	40명	20		10		10	행정시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	40명	17	40명	17		15		2	행정시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1개소	20		20			행정시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5개소	55	5개소	50	20	20		10	행정시
승용마 조련강화	33두	165	36두	175	70	70		35	행정시
승용마 거점 조련시설	1개소	821	2개소	1,341	522	500		319	행정시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14개소	772	9개소	700		350		350	행정시
말 사육 환경개선	6개소	214	12개소	117		70		47	행정시

(단위: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5년 투자실적		2026년 투자계획						주관 기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말 연관제품 소비확대 홍보	1식	23	1식	23		20		3	행정시
말산업 거점 기반 농가역량 강화			1식	10		5		5	행정시
제주 의귀 말 축제	1식	10	1식	30		15		15	행정시
퇴역경주마 휴양목장시범 조성	1개소	100							도
김만일기념관 우수유출저감용역	1식	10							도
레클리스다큐멘터리제작	1식	100							도
시민건강 힐링승마교실	180명	78							행정시
경주마 경매장시설 확충	1개소	800							행정시
말 수송 트레일러	1개소	22							행정시
양돈산업 육성	6개사업	5,301	6개사업	6,842	572	912	3,749	1,609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1식	90	1식	81		81			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9개소	2,175	10개소	1,906	572	381	572	381	행정시
축사시설 현대화	12개소	2,162	13개소	3,978			3,177	801	행정시
기후저탄소 축산사업장 안전반 구축	11개소	647	10개소	600		300		300	행정시
기후저탄소 축산농가 기자재 및 시설	9개소	172	8개소	160		80		80	행정시
양돈장 화재예방 시설	3개소	55	7개소	117		70		47	행정시
양계,가금산업 육성	5개사업	362	5개사업	375		240		135	
도계장 시설보완	2개소	131	2개소	128		77		51	도
도계장 폐기물 처리	2개소	130	2개소	167		100		67	도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2개소	32	2개소	28		28			도
가금농가 시설현대화	2개소	49	2개소	42		25		17	행정시
고품질 계란 생산	400만개	20	200만개	10		10			행정시
양봉,곤충,기타가축 육성	17개사업	1,995	19개사업	2,564	121	1,697		746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	1식	44	1식	45		41		4	도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	2개소	441	4,448박스	378		378			도
양봉 입식			334군	117		70		47	
종봉생산 개량(화분구입)	14,400군	236	12,448군	233		140		93	행정시
전면 소초광	17,384군	200	13,334군	167		100		67	행정시
양봉 생산 기자재	2개소(113대)	266	2개소(96대)	250		150		100	행정시
말벌 퇴치장비	6군	3	2개소(20대)	3	1	1		1	행정시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5,085군	70	5,688군	62		62			행정시
우수 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186드럼	65	1개소	66		66			행정시
기후위기 대응 양봉 저온저장고	6개소	56	10개소	83		50		33	행정시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인센티브	3개소	20	2개소	10		10			행정시
토종벌꿀 명품화			1개소	20		18		2	행정시

(단위: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5년 투자실적		2026년 투자계획						주관 기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곤충 사료화 지원	26개소	410	11개소	285		171		114	도
제주 곤충산업 활성화 언론홍보			1식	30		30			도
미래친환경자원 곤충 산업화	2개소	42	5개소	367		220		147	행정시
곤충 산업화			1개소	400	120	160		120	도
곤충산업 시민인식 확산 시범	1개소	10	1개소	14		10		4	행정시
기타가축농가 시설·장비	1개소	50	1개소	17		10		7	행정시
기타가축(양계,젓소 등)시설·장비	3개소	34	2개소	17		10		7	행정시
우수품종 종봉 보급	1식	9							도
제주산 곤충산물 홍보	1식	39							도
축산물 유통 활성화	12개사업	2,590	12개사업	3,656		2,055		1,601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8개소	259	5개소	250		150		100	도
도축장 노후 위생시설 개선	2개소	1,023	2개소	1,352		676		676	도
도축 폐기물 감량화(~25 이월)	1개소	288	1개소(~25)	999		534		465	도
제주 도새기축제	1식	230	1식	260		130		130	도
축산RE100 인증확대 장려금	4개소	54	9개소	90		90			도
축산RE100 인증시설	1개소	100	1개소	75		45		30	도
제주 축산물 홍보	2개소	152	1개소	22		20		2	행정시
축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판매	8개소	223	4개소	167		150		17	행정시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6개소	119	4개소	67		40		27	행정시
축산물 냉장운반 특장차량			2개소	50		25		25	행정시
가금류 가공유통 시설개선	2개소	78	6개소	308		185		123	행정시
한우브랜드 포장재			1개소	17		10		7	행정시
제주 (흑)돼지고기 홍보	1식	33							도
고품질 축산물 우수등급 장려금	1,000두	30							행정시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23개사업	20,893	20개사업	33,247	10,945	15,075	3,918	3,309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4개소	1,628	7개소	2,202		786	872	544	도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9개소	627	10개소	525		315		210	도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3개소	167	5개소	150		90		60	도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1식	500	1식	500	-	500	-	-	도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3개소	872	5개소	679	-	407	-	272	도
커피박 활용 악취저감친환경 시범	1개소	14	1개소	15	-	15	-	-	도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환경 모델 조성	1식	55	1식	40		40			도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악취관리	3식	9	3식	11	-	11	-	-	도

(단위: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5년 투자실적		2026년 투자계획						주관 기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양돈장 약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	1식	비예산	1식			비예산			도
가축분뇨처리 지원	3건	2,701	3건	12,353	5,577	2,507	3,046	1,223	행정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및유지보수	2개소	5,198	2개소	8,152		8,152			행정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개소	408	1개소	5,568	5,368	200			행정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경영인정화	7개소	787	7개소	787		472		315	행정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	2개소	414	1개소	83		50		33	행정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4개소	387	4개소	375		375			행정시
액비저장조 설치	3,462톤	708	1,857톤	372		260		112	행정시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147개소	124	159개소	137		137			행정시
축산환경개선	100,148톤	717	126,680톤	633		380		253	행정시
축산사업장 약취저감시설	8개소	334	6개소	283		150		133	행정시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10개소	387	10개소	380		228		152	행정시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	1개소	19							도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1개소	4,800							행정시
퇴비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교장비	1개소	40							행정시
조사료 생산이용	12개사업	10,629	11개사업	9,650	2,494	5,157	281	1,718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5,000롤	200	5,500롤	220		110		110	도
마을공동목장 활용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조사	1식	110	1식(25)	47		47			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5건	7,995	5건	7,346	2,171	3,843	105	1,227	행정시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4개소	477	5개소	646	322		176	148	행정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1,284롤	147	947롤	120		72		48	행정시
조사료 물류비	25,010롤	250	29,996롤	217		130		87	행정시
조사료 생산농가 기계장비	4개소	98	4개소	80		48		32	행정시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	490천포	490	480천포	480		480			행정시
TMR 사료배합기	4개소	184	4개소	175		140		35	행정시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4개소	145	6개소	311		280		31	행정시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134ha	4	260ha	7		7			행정시
TMR사료 품질개선	1개소	528							도
축산생명연구원 운영	5개사업	5,187	5개사업	6,623	1,367	5,224		32	
현(축)우개량 및 제주축우 보호 육성	7건	1,228	7건	1,186	338	848			연구원
고령 청정사슴지 및 액상생맥 생산 공급	5건	2,448	5건	2,949		2,949			연구원
마필산업 육성	3건	831	3건	1,350	455	895			연구원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3건	377	2건	813	429	384			연구원
축산기술 교육 및 기술보급 시범	3건	303	5건	325	145	148		32	연구원



- 한우산업 육성
- 낙농산업 육성
- 말산업 육성
- 양돈산업 육성
- 가금산업 육성
- 양봉, 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 축산물 유통 활성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 축산생명연구원 운영

한우산업 육성

가. 사업목적

- 한우 소비촉진을 통한 적정 사육규모 유지 및 가격 안정화
- 소비자에게 한우고기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생산농가 소득 안정 및 고품질 국민 먹거리 제공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고기 부위별 할인판매로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시식회,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제주한우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개소	126,700	-	114,000	-	12,700	
도 본청	1개소	76,700	-	69,000	-	7,700	
서귀포시	1개소	50,000	-	45,000	-	5,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한우 부위별 할인판매, 시식회, 우수성 홍보 등
- 지원대상: 한우 생산자단체
 - (본청)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서귀포시) 전국한우협회 서귀포시지부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2 한(흑)우 경진대회 개최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한(흑)우 육질, 육량 등 경제형질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우수축 출품 농가 자긍심 고취 도모 및 한(흑)우 개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제주 한(흑)우 품질 향상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협, 축협, 한우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진행방안 논의 및 결정
- 외모·육질 등 경제형질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를 시상함으로써 제주산 한우 품질향상 동기 부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24,380	-	62,190	-	62,19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우수 한(흑)우 심사 평가 및 시상, 홍보 전시 등
- 지원대상: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 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3 한우 선진 사양기술 교류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국내 선진 한우 사양관리 기술 교류를 통한 노하우 습득으로 고품질 우량한우 생산 및 제주한우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한 번식 및 사양, 성장 단계별 사료급여 프로그램 등 선진 기술 습득으로 제주한우 개량 가속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식	30,000	-	15,000	-	15,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우수 한우브랜드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선진기술 교류 등
- 지원대상: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한우협회 도지회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 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목적

- 축산업 현안인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전 축산물 생산, 자원 효율화 등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내 연구진의 연구 성과를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식	100,000	-	70,000	-	30,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지원대상: (사)한국축산학회
- 지원비율: 지방비 70%, 자부담 30%
- ※ 학술대회 세부계획(안) 별지 참조

바. 행정사항

- (사)한국축산학회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 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별지】 한국축산학회 국제학술대회 계획(안)

- (명 칭) 2026년 한국축산학회 70주년 국제학술대회(KSAST* 2026)
* Korean Society for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 (주 제) 한국 축산 70년과 미래 한국 축산업의 방향과 비전
- (기 간) 2026. 7. 8. ~ 7. 10.
-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파르나스호텔제주 일원
- (참가규모) 20개국 약 1,000여명
- (주 최) (사)한국축산학회(KSAST),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사)한국축산학회(KSAST), 하림지주, (주)CJ, 제일제당 등
- (행사구성) ①기조강연, ②산업체 특별세션, ③분야별 컨퍼런스, ④젊은 과학자 Competition, ⑤700편 이상의 포스터 발표, ⑥30여 개 홍보부스 전시회, ⑦각종 워크숍과 공식 사교 행사, ⑧축산 관련 기업의 만남 등
- (기대효과)
 - (정보공유) 축산학 분야 국내 최대 학술대회로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정부 및 단체 홍보) 정부 및 축산관련 단체 홍보
 - (비즈니스 기회 제공)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마케팅 기회 제공
 -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전 세계 주요 축산학 관련 연구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
 - (젊은 축산 인재 양성 및 동기 부여)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성과 발표 및 최신 연구 동향 파악 기회 제공

5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전국 한우 적정두수(3,100천두) 대비 초과(`25.9월 189천두, ↑6.1%) 사육되고 있음에 따라 사육두수 감축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암소 도축을 확대하기 위한 수수료 지원으로 사육두수 감축 동기 부여
- 저능력 한우 암소 등 조기 도태를 유도하고 수급 조절을 통한 한우 농가 경영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704두	70,400	-	70,4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제주축협 또는 서귀포시축협 중 1개 조합
- 사업내용: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 도외 도축장 이용 포함)
- 지원대상: 한우암소 도축 농가 또는 법인
 - ※ 제주시 소관 「한우 비육우 도외출하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개체는 중복지원 제외
- 지원기준: 1두당 100천원 범위내(* 사업량 초과시 균등 안분 지원)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 또는 서귀포시축협에서는 협의 후 '26년 사업주관 조합을 결정
 - 사업 효율화를 위해 1개 조합으로 예산 지원하며, 주관 조합에서는 관외 암소도축 물량에 대해서도 관할 축협과 협력하여 수수료 지원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
- 주관 조합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도축실적에 따라 농가별 수수료 지급한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6 한우 생산성 향상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한우 사육 및 우량 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사육시설 개보수, 조사료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제주지역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시설 보완, 기계 장비 등을 확충하여 경쟁력 향상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5개소	534,600	-	267,300	-	267,3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한(흑)우 시설개선,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 ※ 전국 한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축사 신·증축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한(흑)우 농가 (법인)
 - 한우 육종농가 및 HACCP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초지 및 사료포를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 여건을 갖춘 농가(법인)
 - 태풍, 화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지원 필요 농가(법인)
 -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지원 필요 농가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목적

- 저 메탄사료 기준 정립과 보급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일환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이용한 가축 사양으로 지속가능 축산업 실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저메탄 사료 급여에 따른 실증을 통해 급여기준, 가축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참여 확산 유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3,500두)	201,600	-	201,6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저메탄사료(한우, 젓소) 급여에 따른 사료단가 차액 일부 보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품질 분석 등
- 지원대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류연철 교수)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참여농가 내역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목적

- 한(흑)우의 순수혈통 보존 및 개량 촉진으로 경제성 제고
- 인공수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가중심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세대별 등록 유도로 개량 촉진
- 한(흑)우 개량체계 확립 및 등록우의 사후관리 철저로 혈통 유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8,975두	71,800	-	71,800	-	-	
제주시	6,000두	48,000	-	48,000	-	-	
서귀포시	2,975두	23,800	-	23,800	-	-	

※ 두당 지원금액: 8,000원(혈통등록기준, 정액)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등록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업소
- 지원단가: 혈통등록 8,000원/두, 고등등록 10,000원/두
- 지원비율: 정액

○ 등록의 종류 및 등록요령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송아지로 2개월이내 신청
- 등록절차: 생산신고 → 생산확인 → 등록신청 →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로 이상으로 생후 24~48개월령 이내에서 외모심사를 받은 개체 중 외모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나 비경 흑색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
- 개체의 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것
- 등록절차: 대상우 통보 → 심사 →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육종우 지정]

- ① 고등등록우를 부모로하여 생산된 고등등록우로 혈통등록우를 2두 이상 생산하고, 생후 36개월령 이상에서 심사결과 85점 이상인 것.
 - ②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 당해 신청우와 후대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
 - ③ 개체 유전능력 평가결과 4개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A등급 이상이고 D등급이 없는 것
- 지정절차: 대상우 통보 → 심사 → 지정 및 증명서 발급

바. 행정사항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에서는 『한(흑우)등록 실적』 대장을 작성·편철 보관하고 사업 완료 후 완료실적(증빙서류 제출) 및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가. 사업목적

-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송아지생산 유도로 한(흑)우 사육기반 유지
- 인공수정료를 통한 한(흑)우 능력 향상 및 고급육 생산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정확한 혈통관리 및 개체능력 조사로 활용도 제고
-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등록 활성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200두	152,800	-	152,800	-	-	
제주시	7,000두	105,000	-	105,000	-	-	
서귀포시	3,200두	47,800	-	47,8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지역축협
- 지원대상: 한(흑)우 인공수정한 농가(자가인공수정 포함)
- 지원단가: 15,000원/두 (* 암소 1두당 년 1회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는 예산 및 두당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적에 따라 행정시장이 적의 조정하여 집행 가능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인공수정료 지원실적』 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사업 완료시 농가에 계좌입금 후 지원실적 및 완료 신고서,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10 한우 수정란 이식 (행정시)

가. 사업목적

- 능력이 우수한 우량한우 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지부 고능력 한우 수정란을 도내 한우 사육농가에 이식 한우개량을 통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 수정란 이식을 통한 제주한우 경제형질 개량 가속화로 농가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소득증대 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61두	90,250	-	90,250	-	-	
제주시	200두	50,000	-	50,000	-	-	
서귀포시	161두	40,250	-	40,25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우량한우 수정란 구입비 250천원/마리당
- 지원대상: 지역축협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1 저능력 한우암소 도태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를 지원하여 수급 불안정 해소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저능력 한우 암소 조기 도태 유도로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개량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440두	132,000	-	132,000	-	-	
제주시	300두	90,000	-	90,000	-	-	
서귀포시	140두	42,000	-	42,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지역축협
- 사업내용: 2026년 도축 한우 암소중 육질 2등급 이하 개체
- 지원단가: 300천원/마리당 한도 (※ 도축수에 따라 균등 안분 지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2 한우 유전체 분석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제주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을 통해 불량축우 조기 도태 및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제주 한우 개량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암소 혈통 보전 및 능력 배양을 통한 고급육 생산성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680두	26,800	-	26,800	-	-	
제주시	1,000두	10,000	-	10,000	-	-	
서귀포시	1,680두	16,800	-	16,8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지역축협
- 사업내용: 한우 유전체 분석비 지원
- 지원단가: 10천원/마리
 - ※ 유전체 분석 비용은 마리당 80천원 소요되나, 보조금 외 비용은 농협 경제지주 등에서 지원됨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제주우량한우 유전체 분석결과』 대장을 작성·편철 보관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3 한우 친자확인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축산물 수입 개방 대응 우량한우 및 경제형질 우수 개체 선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을 통한 부모 혈통증명으로 가축 개량의 정확성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우 혈통 증명으로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112두	19,460	-	19,460	-	-	
제주시	1,000두	17,500	-	17,500	-	-	
서귀포시	112두	1,960	-	1,96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 지원단가: 17,500원/두(모근채취)
- 지원대상: 지역축협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4 한우 초음파 진단료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한우(비육우)의 출하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생산비 감소 등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 비육우의 육질(량) 등급별 출하시기 단축 또는 조절로 생산비 절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704두	7,040	-	7,04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서귀포시축협
- 지급대상: 이력제 등록 21~33개월령 거세 비육우중 초음파 촬영 개체
- 지원한도액 기준: 10,000원/1회/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서귀포시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서귀포시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사. 기타사항(서귀포시축협 세부 역할)

- 농가 부담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서귀포시축협에서 부담 추진 가능
- 초음파 육질진단 관련 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사업수행에 따른 기초자료, 초음파 영상자료, 사양관리 정보 등 필요한 자료 등 습득된 자료는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초음파 판독 결과분석 정보와 비육우 관리요령을 소속농가에게 제공
- 거세 비육우에 대한 개체정보, 농가정보, 사양관리정보 및 초음파 영상 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
- 출하성적 비교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15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암소를 비육에 활용하여 고급육 생산 차별화 및 한우 수급 조절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 암소 비육을 촉진하여 사육두수 및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35두	18,250	-	18,250	-	-	
제주시	100두	13,000	-	13,000	-	-	
서귀포시	35두	5,250	-	5,25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지역축협
- 사업내용: 한우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 마리당 150천원 지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6 한우 도외 출하 운송비 (행정시)

가. 사업목적

- 도내 한우고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비육우 도외 출하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격하락 방지 및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외 출하시 운송비 지원으로 한우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304두	313,000	-	313,000	-	-	
제주시	1,000두	150,000	-	150,000	-	-	
서귀포시	1,304두	163,000	-	163,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지역축협
- 사업내용: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125천원/마리당
※ 사업량 초과시 균등 안분 지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료 후 농가별 운송 및 도축실적 증명서 및 완료신고서(도축증명서 사본 첨부),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17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도축 수수료 (제주시)

가. 사업목적

-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도축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도내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외 출하를 통한 도내 수급조절 기여 및 제주산 축산물 판매 확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00두	100,000	-	100,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제주축협 계통출하로 도외 출하·도축되는 한우 비육우
- 지원단가: 100천원/두 (※ 사업량 초과시 균등 안분 지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8 한우 비육우 품질고급화 (제주시)

가. 사업목적

- 한우 비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도체 성적이 우수한 개체를 지원하여 농가 실익 증대에 기여하고 도내 축산물 품질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 비육우 고급육 출하 농가에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333두	200,000	-	200,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1⁺⁺A, 1⁺⁺B등급판정 받은 비육우 장려금 지원
- 지원단가: 150천원/두 (※ 사업량 초과시 균등 안분 지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9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제주시)

가. 사업목적

-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 암소 중성화 기술을 통한 비육우 전환으로 한우 사육두수 조절, 제주한우 개량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40두	6,000	1,800	1,800	-	2,4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 지원
-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 지원단가: 150천원/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20 한우 사육환경 개선 (제주시)

가. 사업목적

- 한우 사육시설 보완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농가 편의 증진
- 효율적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 사육시설 개선 및 기자재 설치로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6개소	100,000	-	60,000	-	4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환풍기, 스프링클러, 목잠금장치, 축산시설 개보수, 인공수정 기구 등
 ※ 축사시설 신축 및 증축 지원, 조사료 장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한우사육 농가 및 법인
- 지원단가: 개소당 16,700천원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21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보들결 제주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으로 우량한우 생산 공급
- 보들결 제주한우 고급육 출하 확대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 확대와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 이용한 유통 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5개소	211,950	-	127,120	-	84,83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노후 축산시설 개보수, 한우 사양관리 기계장비 지원
※ 축사시설 신축 및 증축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보들결 제주한우공동브랜드사업단에 가입된 회원 농가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22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확립으로 제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8,334
- 한우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안정적 축산 경영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한우전업농가 집중 육성으로 일관사육체계 확립
-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
- 한우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133,400	-	80,000	-	5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축사 개보수, 내·외부시설, 축산용 기계·장비 등 지원
 - ※ 축사시설 신축 및 증축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및 요건
 - ① 농업법인: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한우사육 농업법인

- ② 한우농가: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한우사육 농가
 - 신청자(법인)가 다수일 경우 한우관련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정책 사업비를 기 지원받는 농가(법인)은 후순위 지원
 -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하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축사) 사용 농가(법인)는 선정 제외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23 소 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가축질병예방 및 한우개량을 위한 사육시설 개선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체계적 가축 사양관리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의 진료, 사양관리 및 퇴비 부숙를 위하여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축산 농가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2개소	16,700	-	10,000	-	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한우사육 농가 및 법인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24 암소비육 전문기술 습득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암소 비육 고도화 또는 저능력 암소 도태 추진을 통해 고품질 한우 고기 생산 및 한우 사육두수 감축 유도
- 일반적인 한우 사양기술은 거세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 암소 비육 전문 사양기술 적극 장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년후계농 등 미래 한우산업을 이끌 인적자원을 주요 대상으로 전문교육 추진
- 암소 비육 전문강사 초빙 및 현지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적용 기술 습득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식	14,400	-	10,000	-	4,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도내·외 암소비육 전문기술 습득 교육운영 경비(강사료,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사)전국한우협회 서귀포시지부
- 지원비율: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사)전국한우협회 서귀포시지부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25 조사료 절단기 지원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사일리지의 절단에서 급여까지 원스톱 작업과 자유로운 이동으로 고령화된 축산농가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하여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곤포사일리지를 절단하여 가축에게 직접 급여까지 가능한 유압식 대형 사료절단기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인 사양관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33,400	-	20,000	-	1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조사료 절단기 구입 지원
- 지원대상: 한우농가 및 법인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26 배합사료 물류비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육지부 생산 배합사료 도내 반입에 따른 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배합사료 반입에 따른 농가부담 물류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0,001톤	600,000	-	600,000	-	-	
제주시	11,667톤	350,000	-	350,000	-	-	
서귀포시	8,334톤	250,000	-	25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지역축협
- 사업대상: (제주시)축산(한우말)농가, (서귀포시)한우농가, 농업(영농)법인
- 사업내용: 배합사료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kg당 30원(1포/25kg 기준 750원 지원)
 ※ 대규모 농가 편중지원 방지 및 소규모 농가 촘촘한 지원을 위해 농가당 최대 5,000천원 한도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관내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매실적 취합(농협사료 및 타 사료업체 포함)하여 매월 정산
- 제주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27 가축 재해보험료 [행정시]

가. 사업목적

-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증가, 화재 발생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재활여건 조성
- 국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 및 농가 부담 완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피해 시 적절한 보상으로 신속한 재활여건 마련
-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양축농가 가축 사육의지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축종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2,700,000	1,350,000	810,000	-	540,000	
제주시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봉	2,000,000	1,000,000	600,000	-	400,000	
서귀포시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봉	700,000	350,000	210,000	-	140,000	

※ 국비는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서 직접 집행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농협손해보험,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제주양돈농협 등
- 사업내용: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지방비 3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축산농가는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 보험사는 분기별 재해보험통합시스템의 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지방비 정산요청
- 행정시장은 정산서류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보조금 교부
- 보험사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28 FTA 대응 흑우 출하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지역 특색 품목인 제주흑우 생산 및 출하 확대를 유도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고 한우 대비 소득 감소분에 대한 손실 부분을 다소 완화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의 육질, 육량, 비육기간 등 전반적 경제형질이 한우 대비 낮게 나타나 장려금 지원을 통한 사육의욕 고취 및 흑우 산업기반 유지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0두	36,450	-	36,45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축협 도축장으로 제주흑우, 흑우 실용축(내륙흑우 포함) 도축 출하시 해당 농가(법인)에 장려금 지원
- 시행기관: 제주축협
- 지원기준: 1~12월까지 출하두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 단, 육질등급 등외판정 개체는 지급 제외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는 사업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기타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는 흑우 출하내역 확인하여 출하 농가(법인)에 월별로 장려금 지급 후 완료 및 정산 보고

29 흑우 소득직불금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제주흑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육질·육량 등 경제형질 개량이 한우에 비해 낮아 농가 경영 부담으로 사육두수 감소
- 흑우산업 안정화시 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안정 지원으로 사육기반 유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 사육에 따른 사료비, 관리비 등 경영비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
- 제주 고유의 가축유전자원인 흑우를 농가 소득과 연계한 품목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00두	130,000	-	130,000	-	-	

※ 사업량은 흑우 농가 신청규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 ※ 예산범위내에서 내륙흑우 암소까지 지원가능
- 협조기관: 지역축협(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지원기준: 3월말 기준 사육 암소 총 마리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흑우 사육농가는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조합으로 신청
 - ※ **기한내 신청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유의**
- 지역축협은 관내 농가 신청서의 사실확인 요청에 의거 이력제 정보와 사육여부를 확인하여 집계표 및 신청서(원본)를 2026.4.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신청 농가(법인) 금융기관 계좌로 직불금 지급

흑우 소득직불금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농장·법인명칭				사업장소재지							
흑우 사육현황 (두)	구분	종류별				연령별					
		계	원종	실용종	내륙흑우	계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계										
	암수										
	거세										

흑우 암소의 개체 이력 등

연번	개체번호	출생일 (년월일)	연령 (개월)	종류 (원종, 실용종, 내륙흑우)	모색유전자 유형	번식용 활용여부	사육여부 (여, 부)
1							
2							
3							
4							
5							

2026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흑우 소득직불금을 신청합니다.**

흑우 소득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첨부: 통장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조합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가. 사업목적

- 흑우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 특별자치도 인증점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흑우의 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 생산, 유통 사업장에 대한 차별화 지원 정책 추진으로 농가와 유통업체의 자긍심 고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4개소	190,000	-	19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인증점 농가(판매점) 자율사업으로 브랜드 인증,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소모성 경비 지원
- 지원대상: 흑우 인증점으로 지정받은 농가, 유통업체
- 지원기준: 생산농가·음식점 15,000천원/개소, 유통업체 5,000천원/개소
※ 흑우 생산, 유통 판매 등 두수(물량)에 따라 지원기준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인증농가(인증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 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가. 사업목적

- 제주 고유의 향토자원인 제주흑우의 품질 우수성 홍보 강화등으로 흑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흑우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주흑우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50,000	-	45,000	-	5,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TV광고,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 지원대상: 축협, 생산자단체, 흑우 인증점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 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목적

- 저체중 및 유전형질이 낮은 흑우 실용축을 수매 도태하여 제주 흑우 산업 경쟁력 강화
- 육질 육량 등 경제형질 저하 실용축 조기 도태 유도로 개량 촉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 불량 유전자 보유 개체를 조기에 도태함으로써 고급육 생산 촉진
- 제주흑우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86두	25,800	-	25,8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흑우 등록우, 실용축 수매 도태에 소요되는 손실분 지원
- 경산우는 구입후 10개월 이내, 미경산우 40개월령 이내 도축 출하된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 마리당 300천원 범위내
※ 단, 도태 규모와 손실 요인의 타당성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서귀포시축협에서는 저능력우 수매도태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서귀포시축협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도태 출하시 까지 소요된 비용을 개체별로 산출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33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제주 흑한우 브랜드에 대한 명품 이미지 제고 및 홍보 강화를 통해 타도산 브랜드와 차별화로 경쟁력 강화
- 제주 흑우의 역사성, 우수성을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보들걸」 제주한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흑한우 브랜드 홍보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식	277,800	-	250,000	-	27,8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흑한우 홍보관 운영, 할인판매 및 시식회, 흑한우 요리경연대회 등
- 지원대상: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서귀포시축협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34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 장려 (행정시)

가. 사업목적

- 흑우 사육규모 확대를 위한 암소사육을 장려하고 생산비 상승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 산업화 핵심 요건인 사육규모의 확대를 위해 송아지 생산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산업화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50두	150,000	-	150,000	-	-	
제주시	50두	50,000	-	50,000	-	-	
서귀포시	100두	100,000	-	10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시행: 행정시장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2026년 등록된 흑우 송아지에 장려금 지원
 - ※ 2025년 미지급된 흑우 송아지 포함하여 지원하며, 제주흑한우, 내륙 흑우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지역축협(흑우 송아지 생산농가)
- 지원단가: 700~1,000천원/마리
 - ※ 흑우 송아지 생산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내 균등 안분 지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흑우 송아지를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하고 해당 기록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 연구원에 송부(생산자, 성별, 혈액 등)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지역축협에서 송부된 혈액을 유전자 분석하여 흑우 여부를 판명하고 그 결과를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유전자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사)종축개량협회제주사업소로 등록 신청하고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는 등록이 완료되면 지역축협으로 통보
- 지역축협은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시(축산과)로 보조금 교부신청(흑우 혈통증명서 및 흑한우 관리 등록증 첨부)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하고 지역축협은 해당농가에 보조금 지급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35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제주 고유의 자원인 흑우를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시설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흑우 사육기반 유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흑우전업농가 집중 육성으로 일관사육체계 확립
- 안정적인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 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2개소	83,400	-	50,000	-	3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축사 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흑우사육 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낙농산업 육성

1 젓소 성감별정액 보급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젓소 성감별 정액 보급을 통한 암소생산을 유도하고 숫송아지 생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육비를 절감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젓소 암소 생산을 확대하여 산유량 증가 및 농가 경영수지 개선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008두	75,600	-	75,6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젓소 성감별 정액 1,008두분 공급
- 지원대상: 제주축산업협동조합(도내 젓소 사육농가)
- 지원비율: 정액(두당 75천원)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에서는 참여농가,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공모 제외 사업)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2 소규모 낙농가 경영안정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사료비 상승과 원유쿼터제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낙농가에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제주 낙농산업 기반 유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소규모 젖소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낙농산업 경쟁력 향상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7개소	48,600	-	48,6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소규모 낙농가 사료비 지원
-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1일 착유량 1,000L 내외 소규모 농가
 - ※ 목장형 유가공업 운영농가는 제외하며, 농가별 착유량 및 쿼터량 초과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배분 예정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에서는 농가별 집유량 및 쿼터량 초과 내역, 추진일정,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공모 제외 사업)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쿼터초과량,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농가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가 희망시 외상 사료비 상환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
- 제주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3

수입개방 대응 제주산 유제품 가공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유제품 생산 장비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일환으로 제주산 원유 활용 OEM 가공 지원을 통한 제품 다양화 및 시장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공비 지원으로 제주산 원유의 활용 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OEM 기반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설비투자 부담 완화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3개소	600,000	-	300,000	-	30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산 원유 OEM 의뢰에 따른 가공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 2025~2026년 OEM 가공실적 및 계획, 집유(예상)량 및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분 예정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2025~2026년 OEM 가공실적 및 계획, 집유(예상)량 및 농가수,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4

유가공장 자동설비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수입 유제품 등과의 경쟁력 강화 및 제주산 우유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고품질 유제품 품목 다양화로 판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 다양한 유제품 개발을 통한 제주산 유제품의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2개소	227,500	-	136,500	-	91,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유제품 생산장비, 유가공장 시설보완, 목장형 유가공시설
- 지원대상: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 해당 유가공업에서 기존에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새로운 유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5 다품종 유제품 시 기반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AI 기술 활용한 데이터 기반 자율제조 공정 최적화·지능형 설비 구축으로 낙후된 제조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성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 도입을 통해 유제품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및 지역 낙농·유가공 산업의 혁신
-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공정 최적화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 낙농가 및 기업에 확산하여 산업 전반 혁신 기반 강화

다.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기타	
1개소	4,148,000	2,700,000	700,000	-	748,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AI 제조시스템, 원유 품질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AI 판매예측 기술 및 협동로봇 포장 등
-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 참여업체: (주)제주우유(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

바. 행정사항

- 제주테크노파크(제주우유 협조)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내용, 예산배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제주테크노파크간 공기관대행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제주테크노파크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세부 추진상황 및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기반 확대
- 온·오프라인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다각적 홍보를 통한 제주산 유제품 시장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홍보물 제작·판촉 활동 추진을 통한 판로 확대 도모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54,000	-	48,600	-	5,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TV 및 라디오, SNS 등 홍보, 홍보물 제작, 소비 판촉 등
- 지원대상: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7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운송비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원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 도외 소비 촉진을 통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유제품 도외 소비를 확대하여 우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5개소	67,010	-	67,01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유제품 도외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 전년도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에 따라 사업비 배정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25년 우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품목별, 월별),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목적

- 우유급식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의 교우간 노출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배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우유급식의 원활한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유급식 대상 계층간 차별 노출 요인을 해소하고 유업체 물류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60,040	-	60,04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학교우유급식 가정 배송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학교우유급식 납품 유업체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서류에 의거 배송대상 인원수, 예산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 증진 및 식생활 개선
- 우유 음용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확대를 급식을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9,963명	1,320,000	792,000	179,700	-	-	
제주시	7,306명	968,000	581,000	387,000	-	-	
서귀포시	2,657명	352,000	211,000	141,000	-	-	

※ 신청인원 초과,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급식대상 우유: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국내산 원유 100%) 및 유가공품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품목: 백색우유(국내산 원유 100%), 강화우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유당분해우유(국내산 원유 99%이상), 치즈 등
 - 지원단가: 530원/개 (우유 및 가공유 100ml이상 및 동급준한 가공품)
 - 급 식 일: 250일 내외 (1월 1일 ~ 12월 31일)

바. 행정사항

- 유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제주산 우유에 한하여 선정(멸균유, 가공유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선정)
- 행정시장은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
-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배정받아 행정시별로 배분
- 행정시에서는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세부사항 중 계획에 미포함된 내용은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참조

10 젓소 혈통등록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선발을 통한 종빈우 후대검정 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개체별 혈통관리·능력조사 등 기록유지로 젓소 유전평가 신뢰도 제고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500두	5,000	-	5,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젓소 송아지 등록비 및 선형심사 비용
-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젓소 사육농가
- 지원기준

(단위: 원)

구분	기초 및 혈통등록		고등등록 (♀)	선형심사 (예산범위 내)
	3개월 미만	기초 및 3~6 개월 이상		
지원비용	8,000	11,000	22,000	12,000

※ 선형심사비용(마리당 12,000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반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제주시장에게 제출 및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11 고능력 유전형질 젖소 정액 보급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고능력 젖소 정액 지원으로 농가별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원유 생산
- 생산능력 및 번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정액 지원으로 젖소 개량 효율성 극대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 유전형질 보유 고능력 정액지원으로 젖소 개량속도 가속화 및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250두	20,000	-	2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고능력 젖소 정액 구입 비용 지원(※ 두당 80천원 한도)
-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젖소사육 농가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반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제주시장에게 제출 및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12 낙농시설 현대화 (제주시)

가. 사업목적

- 낙농시설 자동화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위생적인 원유 생산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의 사양관리, 원유생산, 질병관리 등 현대화 사양관리
- 가족 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낙농가 지원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개소	60,000	-	36,000	-	24,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착유장시설, 착유기, 냉각기, 사육시설(급이·급수시설) 및 장비(전산장비, 비상발전기), 축사 개보수 등
- 지원대상: 낙농 현대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젖소 농가 및 법인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농가(법인)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3 원유 유질개선 (제주시)

가. 사업목적

- 미국·EU 등 주요국가의 유제품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고품질 우유 생산 유통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 제주산 청정우유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낙농산업 경영기반 확보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3,000kℓ	30,000	-	3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세균수 1등급, 체세포수 1등급 이상 원유에 대한 생산 장려금 (1L당 10원 지원)
-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젖소사육 농가, 법인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에서는 축협 낙농작목반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14 착유시설 세척제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으로 국민보건 및 위생수준 향상
- 제주산 청정우유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 회복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인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00통	15,000	-	9,000	-	6,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친환경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통당 30천원 이내)
-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젓소사육 농가, 법인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제주축협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말산업 육성

1 도지사배 대상경주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제주지역 향토마인 제주마에 대한 경주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산업화 및 생산자 소득향상 등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호. 육성
- 제주지역 향토마의 경주능력 향상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경마의 건전화, 대중화, 선진화 도모
- 제주마 축제 기간 내 제주마 최고의 경주시행으로 도지사배 위상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348,000	-	243,000	-	105,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 사업내용: 대상경주 경마상금(마주, 기수 등), 제주 말 문화 축제, 홍보 행사비용 등
- 지원비율: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2 탐라배 대상경주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경기도 과천, 부산·경남 경마공원(경마장)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시행으로 제주산 더러브렛 마필에 대한 우수성 홍보
- 우승마 선정 및 시상을 통한 생산농가의 우수 경주마 생산 의욕 고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더러브렛 경주마 우수성, 경주마 생산농가 홍보를 통한 우수 경주마 생산 의욕고취 및 경주능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348,000	-	243,000	-	105,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한국마사회(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 사업내용: 대상경주 우승 마필에 대한 마주, 기수 등에 시상금 및 홍보 행사비(제주 농수축 특산품 홍보 행사 병행 추진)

※ 출전자격: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시행 경매에서 거래된 4세 이하 암말

- 지원비율: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 승인 등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3 우수 씨수말 도입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경주마 생산을 위하여 경주 능력이 검증된 우수 씨수말 도입 및 종부 지원
- 경주마 경주능력 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간차원의 우수 능력 씨수말 확보 및 저렴한 종부서비스 제공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및 적정 거래가격 형성 도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두	593,914	296,957	296,957			
당해년도	1두	400,000	200,000	200,000			
'25 이월	1두	193,914	96,957	96,957			사고이월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사업내용: 우수 씨수말 구입비 일부 지원
 - 도입대상 씨수말은 부모, 조부모 등 선대 3대이상의 혈통을 보유한 말로써 경주능력이 검증되었거나, 경주능력이 명확하게 우수하다고 예측되는 개체를 선정
 - 자체 씨수말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농가 사전 설명 등 민원 최소화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바. 행정사항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입대상 씨수말에 대한 혈통, 경주기록 등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 승인 등 보조금 교부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에서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사. 기타사항

- 도입마는 최초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 소유, 관리를 의무화
 - 해당 말의 매각, 증여, 양도 등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말의 번식능력 저하(또는 상실)로 인한 번식활용 지속 불가시 수의사 진단 및 우리 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용도 변경
-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보험가입증서 사본 제출)
 - 기간 내 사고로 인한 보상금 수령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대체 씨수말 구입 등 말산업 발전에 재투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
- 씨수말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거래증명서 등 각종 자료를 명확히 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씨수말 교배료는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비회원농가의 교배도 일정 부분 지원(교배료는 회원농가 기준 2배 이하)
 - (예시) 회원농가 교배료 2백만원, 비회원농가 교배료 4백만원 이하

4 제주마 종마 구입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우수 경주마 생산을 위한 우수 능력 씨수말 구입 및 종부지원
- 우수 씨수말 종부서비스 제공으로 경주마 능력향상 및 자원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 종마 종부서비스 제공으로 제주마 경주능력 향상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개소	160,000	80,000	8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시행기관: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사업내용: 우수 제주마 씨수말 구입비 지원
 - 도입대상 씨수말은 경주능력이 검증되었거나, 경주능력이 명확하게 우수하다고 예측되는 개체를 선정
 - 자체 씨수말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농가 사전 설명 등 민원 최소화
 -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바. 행정사항

- 제주마생산자협회에서는 보조금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 승인
- 제주마생산자협회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 기타사항

- 도입마는 최초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 소유, 관리를 의무화
 - 해당 말의 매각, 증여, 양도 등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말의 번식능력 저하(또는 상실)로 인한 번식활용 지속 불가시 수의사 진단 및 우리 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용도 변경
-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보험가입증서 사본 제출)
 - 기간 내 사고로 인한 보상금 수령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대체 씨수말 구입 등 말산업 발전에 재투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
- 씨수말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거래증명서 등 각종 자료를 명확히 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씨수말 교배료는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비회원농가의 교배도 일정 부분 지원(교배료는 회원농가 기준 2배 이하)
 - (예시) 회원농가 교배료 2백만원, 비회원농가 교배료 4백만원 이하

5 제주마 경매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제주마 생산 농가의 마필 판매 어려움 해소 등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
- 제주마 경매 프로세스 등 절차 정립을 통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마 유통시스템 구축 및 경매 활성화로 제주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42,200	-	25,300	-	16,9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마 경매에 따른 운영비 일부 지원(인쇄비, 인건비 등)
- 지원대상: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마생산자협회에서는 보조금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 승인
- 제주마생산자협회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가. 사업목적

- 제주 경마 시행에 따른 불의의 사고 및 부상 등으로 인하여 경주마 조기 퇴역 시 지원을 강화하여 손실부담 완화 및 경주자원의 지속 확보 유도
- 안정적인 제주 경마 자원 확보로 레저세 등 지방 세수입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마 손실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제주 경마 자원 확보 및 운영 도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8두	16,200	-	16,2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경주 조기퇴역마(폐사, 경마부적격, 안락사 등) 지원
- 지원대상: (사)제주마주협회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7 우수 제주마 유통 장려금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경매시장에서 우수 제주마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적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제주마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마 품평회를 통한 우수 마필 조기 선별 및 경매 유통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20마리	120,000	-	12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마 품평회 및 경매 참여 농가 장려금 지원
- 품평회 개최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하위 20% 미지원)
- 지원대상: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사업수혜자: 제주마 생산농가)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마생산자협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 승인
- 제주마생산자협회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8 제주산 마필 조련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말 조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육성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련·육성을 통한 제주산 마필 브랜드 가치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육성 마필에 대한 안장과 기승 순치 후 승용 및 경주자원으로 판매 등 마필 가치 제고를 통한 말 생산농가 소득 향상 도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76마리	176,000	-	105,300	-	70,7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조련 순치비 1,000천원/월(보험료·부가가치세 포함)
 - 안장순치(1개월): 굴레, 조마삭 및 안장 순치
 - 기승순치(1개월): 굴레, 조마삭, 안장 및 기승 순치
 - ※ 조련 중 조련중지, 판매 등으로 퇴사 시 지원사업비 일할 정산
-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사업수혜자: 말 사육 농가
 - ※ 대상 마필: 등록기관에 등록된 18~36개월령 경주 출전경험이 없는 마필 또는 승용마로 전환하는 경주퇴역마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축산사업 추진계획 공모 신청(보조사업자 → 도)
- 자체 선정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대상 마필 모집(보조사업자 공모)
- 마필 조련 신청 및 계약 체결(수혜자 → 보조사업자)
 - 사업수혜자 자부담금 납부
- 마필 조련 및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정산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실적보고서 심사 및 정산결과 확정 통지(도 → 보조사업자)

9 민간 승마대회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말의 고장이자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에서 승마를 테마로 한 민간 승마 대회 유치 및 개최로 스포츠,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
- 대회 참가 승용마 품평, 승마 기술 교류 등을 통한 승마산업 활성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오름, 목장 등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환경을 배경으로 대회를 개최
- 국내외 선수, 생활체육인, 동호회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프로그램 다양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회	600,000	300,000	300,000	-	-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이며, 지원 규모에 의거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민간승마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승마관련 단체 등
- 지원비율: 지방비 50%, 기타(국가직접지원) 50%

바.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및 세부계획 수립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사업계획 승인 및 자체 선정 결과 알림(도 → 보조사업자, 한국마사회)
- 승마대회 지원 공모사업(농림축산식품부) 신청(보조사업 → 한국마사회)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한국마사회 → 도, 보조사업자)
-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일괄 교부(도 →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추진

- 승마대회 개최 및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정산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실적보고서 심사 및 정산결과 확정 통지(도 → 보조사업자)

10 학생승마체험(학교체육)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잠재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 비용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승마강습 일부지원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80명	25,600	7,680	10,240	-	7,68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지원대상: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업수혜: 토평초등학교)
- 사업내용: 승마강습비 및 보험료 일부 지원
 ※ 1인당 승마교육비: 320천원 = (10회 × 30,000원) + 20,000원(보험료)

바. 행정사항

- '26년도 학교체육 승마 지원사업 참여학교 신청접수 및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승인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정산자료 제출

11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승마시설 등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으로 승마 기반시설 확충 및 승마 보급 활성화
- 국제 승마대회 공인 규격에 맞는 승마시설 설치로 도내 승마대회 활성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승마산업 경쟁력 향상과 승마대회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000,000	400,000	400,000	-	200,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지원대상: 제주대학교
- 사업내용: 승마시설 신축 및 개보수
 - ※ 2026년 전국체전 승마대회 대비 공공승마시설 확충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 설계 내역 및 도면,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도지사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12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자연경관과 중산간 지역 목장길, 임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성된 에코힐링 마로의 유지관리를 통한 승마산업 활성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의 풍부한 말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성된 마로 활용도 제고로 농어촌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개소	30,000	-	3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지원대상: 에코힐링마로
 - ※ 마로 상태, 이용·활용 등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마로 노면정리, 안내판 및 시설보완 등 유지관리
- 지원비율: 시설비(도 발주 사업)

바. 행정사항

- 에코힐링마로 활용 계획(승마대회 등) 검토 및 현지 점검
- 도지사는 공사예정지 확정 및 마로 유지·보수 공사 시행

13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사육단계부터 체계적인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 말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마육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용 더러브렛 말고기의 식육시장 진입방지, 고품질 말고기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소비 대중화로 마육 산업 브랜드가치 제고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94마리	52,650	-	52,65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말 거세 시술비, 우수등급 장려금, 말고기 가공비 지원
- 지원대상: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수혜자: 말 생산농가, 유통업체, 말고기 취급 식당 등
- 지원기준(마리당)
 - 비육마 전환 장려금 450천원, 말 거세비 100천원
 - 우수등급 장려금(1등급) 400천원, 가공비 100천원
 - ※ 더러브렛 제외, 제주마·제주산마(한라마)·육용마만 가능하며,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기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상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 홍보 철저
- 농가는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생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서식 1>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 신청서(농가 → 제주축협)

사업명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우수등급판정지원)			
신청인	명칭			
	주소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도축기간				

도축일	도축번호	도체등급	판매 업소명	신청액(원)	품종
계					

사업비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기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및 관계부서에서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장려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2>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 신청서(음식점 → 제주축협)

사업명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가공비)			
신청인	명칭			
	주소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가공일	도축번호	도체등급	가공업체명	신청액(원)	품종
계					

사업비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기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및 관계부서에서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가공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분가공확인서 및 영수증(또는 거래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3>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 신청서(농가 → 제주축협)

사업명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비육마 거세시술비 지원)			
신청인	명칭			
	주소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거세일	마번	동물병원명	신청액(원)	품종
계				

사업비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기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및 관계부서에서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비육마 거세장려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거세시술사진 및 수의사 확인증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동의

비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개체별 등급판정 결과 등 자료전산화 등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실적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동의

비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실적이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14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말고기 도체등급 판정제 및 말고기 음식점 인증제 운영, 우수성 홍보를 통한 제주산 말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및 안전성 논란 해소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고기의 우수성, 안전 축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제주 말고기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 소득 안정 도모 및 말고기 산업 외연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개소	18,900	-	17,010	-	1,89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산 말고기 홍보 행사, 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
- 지원대상: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사업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5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인프라 지원으로 경마, 승마 및 연관산업 등 말 관련 전문인력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교육 인프라 확충, 학생·교원 연수 및 전문가 특강 교육 등으로 말산업 관련 교육 역량 강화 및 우수한 교육 기회 제공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3개소	508,002	254,001	254,001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말 관련 교육 실습기자재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대상: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학교(3개소)

(단위: 천원)

대상자	경상보조			자본보조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308,002	154,001	154,001	200,000	100,000	100,000
제주대	112,446	56,223	56,223	200,000	100,000	100,000
제주한라대	97,778	48,889	48,889	-	-	-
서귀산과고	97,778	48,889	48,889	-	-	-

- 지원비율: 국비 50%, 도비 50%

바. 행정사항

- 지원대상 학교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승인
- 각 학교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정산자료 제출

16 제주마 축제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말의 고장 제주에서 말을 테마로 한 ‘제주마 축제’ 행사에 대한 일부 사업비 지원을 통한 도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 제주의 특성을 살린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제주말 산업의 영역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국마사회의 ‘제주마 축제’ 행사기간중 제주지역 말 관계자의 참여 확대 및 일반인에 대한 승마체험, 말 관련 전시 및 이벤트,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말산업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회	18,000	-	12,600	-	5,4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마를 테마로 한 축제 개최 지원
- 지원대상: 한국마사회(제주본부)
- 지원비율: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는 축제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보고

17 말산업 과제 발굴 토론회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2014년 말산업특구 제1호 지정된 이후 제주 말산업의 육성·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특구 운영에 따른 협력 체계 및 정보 교류의 장 등 마련
- 제주 말산업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여 말산업의 정책적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공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내 말산업 발전 방안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특구 운영에 따른 정보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회	10,000	-	1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말산업특구 지정 지자체 발전과제 발굴 토론회 등 개최·운영

바. 행정사항

- 말산업 과제 발굴 토론회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토론회 진행 및 홍보 등 대행업체 및 단체 계약
- 토론회 개최 및 사업비 집행·정산

18 현마공신 정신계승 및 말산업 진흥 심포지엄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조선시대 마필을 헌납하여 국난극복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현마공신 김만일의 업적 홍보 및 정신계승
- 제주 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아시아 말산업 국가 상호 교류를 촉진시켜 말산업의 상호 상생 발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 문화 사업 발굴 및 아시아 지역 말산업 국가 상호 교류를 통한 상호 협조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회	27,000	-	27,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심포지엄 행사 홍보 및 운영 등

바. 행정사항

- 심포지엄 행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심포지엄 행사 진행 및 홍보 등 대행업체 및 단체 계약
- 심포지엄 행사 개최 및 사업비 집행·정산

19 김만일기념관 위탁 운영관리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지역의 말 관련 역사 전통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제주 말산업의 산업적 문화적 가치 제고
- 제주지역 말 관련 역사 인물인 ‘김만일’을 테마로 건립된 현마공신 김만일 기념전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지역 말 관련 전통의 계승과 유무형의 역사적 자료를 활용한 말산업 시각화 등 전통문화 계승 및 말 문화의 저변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37,055	-	237,055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현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위탁 운영 관리(인건비, 공공요금 등)
- 수탁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및 단체

바.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위탁자(도지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비 교부
- 수탁자는 월별 운영상황 보고 및 분기별 정산보고서를 제출
-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 제출

20 제주 말 문화유산 활용 및 가치창출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제주도의 말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 말문화의 정체성 확립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 말문화 고유의 역사와 말산업의 변화를 기획 취재하여 제주 고유 말문화 홍보 및 콘텐츠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개소	25,000	-	25,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 말문화 취재 및 홍보, 토론회 개최
- 지원대상: 한국언론진흥재단

바. 행정사항

- 도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사 선정사항을 통보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선정된 언론사에 기획취재 등 요청하여 기사 등 내역 확인
- 도에서는 언론홍보진흥재단에서 사업 종료 후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지출

21 경주마 X-ray 진단비 (행정시)

가. 사업목적

- 말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우수 말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해소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매마 하자방지를 통해 낙찰률 향상 효과 및 비대면 경매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계	520두	130,000	-	130,000	-	-	
제주시	480두	120,000	-	120,000	-	-	
서귀포시	40두	10,000	-	1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국내산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보조사업자: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최종수혜자: 경주마(더러브렛) 경매 상장 농가
- 지원기준: 1두당 250천원 내외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경매 상장하는 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사업신청서(수의사 지정내역, 경매 상장 일자 등 첨부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사업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경매 상장을 경주마 소유자는 경매 전 지정된 수의사에 X-ray 검사를 신청하여 X-ray 촬영 실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사업추진 실적 제출

22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 등록비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제주마 경매 활성화를 통한 생산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우수한 경주용 제주마의 혈통보존 유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국제적 신뢰 및 인정받는 고품질 경주용 제주마를 생산하여 말산업 특구의 세계적 위상 확보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80두	24,000	-	24,000	-	-	
제주시	50두	15,000	-	15,000	-	-	
서귀포시	30두	9,000	-	9,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최종수혜자: 제주마 경매 상장 농가
- 지원기준: 1두당 300천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제주마생산자협회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행정시장에 완료 보고

23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우수 능력의 경주마 생산
- 경주마의 자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마 가치 상승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2개소	58,400	-	35,000	-	23,4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사육·조련시설, 장비 등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 지원대상: 경주마 생산·사육농가 등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 말(경주마) 등록내역, 견적서 또는 내역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4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승마를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도시민의 승마 접근성 확대
- 승마를 미래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승마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프로그램 참여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 승마 저변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개소/650회	97,500	29,250	29,250	-	39,000	
제주시	4개소/450회	67,500	20,250	20,250	-	27,000	
서귀포시	2개소/200회	30,000	9,000	9,000		12,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외승 프로그램 참여비의 60% 지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에 한함)
- 지원기준: 150천원/회(1회 2시간 기준, 1인당 최대 3회 지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지원대상 시설은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증빙자료: 말 관련 국가 자격증(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 첨부), 승마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기승능력 7등급 인증서, 참여자 별 외승 사진 등 자료 징구 철저
-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가. 사업목적

- 승마를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도시민의 승마 접근성 확대
- 승마를 미래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승마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 승마장 운영 프로그램(승마트레킹) 활성화를 통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승마+관광+숙박 연계)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1,521회	403,340	121,000	121,000	-	161,340	
제주시	1,069회	276,670	83,000	83,000	-	110,670	
서귀포시	452회	126,670	38,000	38,000		50,67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승마트레킹 프로그램(승마+관광+숙박) 참여비의 60% 지원
- 지원기준: 최대 280천원/회(1회 기준, 1인당 최대 3회 지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지원대상 시설은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증빙자료: 말 관련 국가 자격증(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 첨부), 승마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참여자 체험 동의서, 숙박 또는 관광 증빙자료, 참여자 별 외승 사진 등 자료 징구 철저
-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6 학생 승마체험 [행정시]

가. 사업목적

-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잠재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 비용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마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인터넷 중독 등 피해예방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265명	1,124,800	354,920	458,660		311,220	
제주시	1,890명	637,800	201,420	260,160		176,220	
서귀포시	1,375명	487,000	153,500	198,500		135,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참여 승마시설: 체시법 또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승마시설
 - 참여학생은 개인상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레저상해보험) 가입 필수
- 지원기준 및 형태

구분	학생승마	학교체육	7등급	사회공익	재활승마	비고
지원기준(원/1인)	320,000	320,000	620,000	320,000	420,000	보험료 포함
지원비율 (%)	계	100	100	100	100	
	국 비	30	30	30	50	50
	지방비	40	40	40	50	50
	자 담	30	30	30	-	-

바. 행정사항

【행정시장】

- 행정시장은 학생승마체험 희망 승마장을 모집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 참여 모집 및 선발
- 승마장 사업량에 맞게 체험인원 배정
- 승마체험 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 승마시설로부터 보험가입내역, 출석기록부, 체험사진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보조금 집행(보험가입기간 내 승마체험 여부 확인)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점검(수시)

【승마시설】

-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종료 후 행정시에 출석기록부,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행정시에 보고
 - ☞ 10회 미만 체험 시 1회 당 30,000원을 적용하여 지원비율 적용(보험료는 환급불가)
 - 예) 8회 승마체험 시: 30,000원 × 2회(잔여) = 60,000 × 70%(기금+지방비) = 42,000원 미 지원
-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7 유소년 승마단 지원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통한 승마산업의 핵심인력 육성
- 미래 승마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 및 승마활성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소년 승마 지원을 통한 승마를 미래 레저산업 핵심축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개소	271,000	135,500	135,500	-	-	
제주시	8개소	213,000	106,500	106,500	-	-	
서귀포시	2개소	58,000	29,000	29,000	-	-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승마용품 등 물품구입 및 교육비, 대회참가비 등 운영비
- 지원기준: 개소당 10~3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견적서, 납품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자료징구 철저
 -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행정시장은 제출 서류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가. 사업목적

- 제주시민 승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승마교실 운영으로 체계적인 승마 교육의 장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힐링 스포츠로서의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인구 저변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0명	20,000	-	10,000	-	10,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심리과약 등 승마기본 훈련 및 이론교육, 보험료 등
-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승마장(제주시 거주 20세 이상 남, 여)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승마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29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양적성장 위주의 승마산업에 치유(재활)승마 등의 다변화를 통해 말산업의 다양한 소득 창출의 기회 모색
- 취약계층의 승마 운동을 통한 재활의지 고취와 재활승마 지도자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취약계층에 대한 승마교실 운영으로 승마산업의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40명	16,800	-	15,000	-	1,8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심리과약 등 승마기본 훈련 및 이론교육, 보험료 등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제주시 관내 승마장(행정시 거주 취약계층 지원)
 - ※ 재활승마 가능 승마장 우선 지원
 - 최종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취약계층
- 지원단가: 420천원/10회 기준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승마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행정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30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제주시)

가. 사업목적

- 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으로 균등한 승마교육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리적 제약이 있는 도서지역 학생들의 승마기회 제공으로 승마교육 평준화
- 학생들의 승마 참여 동기 강화 및 미래 승마인구 저변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20,000	-	2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승마장(제주시 도서지역 초·중학생)
- 지원비율 : 지방비 100%(※ 보험료 가입 등 자부담 발생 가능)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승마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31 시민건강 힐링승마장 조성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노후·낙후된 승마장 화장실, 탈의실, 편의시설 등 개선을 통한 승마장 이용객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승마장 이미지 개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시민 승마 여건이 적정한 승마장에 대하여 서귀포시장 인증을 통한 시민건강 승마장 표준모델 제시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5개소	50,000	20,000	20,000	-	1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화장실, 탈의실, 승마장 안전시설 등 승마장 환경 개선
- 사업대상: 시민건강 승마장 인증 승마시설(예비 신청 포함)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승용마)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가. 사업목적

- 승용마의 위탁조련비 지원을 통해 승마인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승마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용마의 순차·조련을 통해 승마가 보다 안전한 여가활동으로서의 인식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5두	175,000	70,000	70,000	-	35,000	
제주시	25두	125,000	50,000	50,000	-	25,000	
서귀포시	10두	50,000	20,000	20,000	-	10,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사양관리, 조련, 진료, 운송비 등 위탁조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평가 심사 결과 선정자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계약서, 조련일지, 평가표 등 자료징구 철저
-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가.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승용마 조련시설 확충으로 말산업 저변확대
- 육성마 및 승용마의 육성·조련 확대로 우수한 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 마련으로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용마 전문 조련시설 운영을 통한 우수한 제주산 승용마 생산 으로 내륙시장 보급을 장려 확대하여 승용마 사육농가 소득 증대
- 훈련용 주로 조성 및 마사를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마필 육성·조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2개소	1,341,270	521,900	500,000	-	319,370	
제주시 (25 이월)	1개소	91,270	21,900			69,370	
서귀포시	1개소	1,250,000	500,000	500,000		250,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 주 시) `25년 이월사업
(서귀포시) 승용·경주마 훈련용주로(길이 900m/폭6m),
마사 신축(360m²)
- 지원대상: (제주시)와산영농조합, (서귀포시)서귀포시축협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 시행
 - 사업대상 승마시설은 설계 내역 및 도면,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에게 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진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34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제주시)

가. 사업목적

- 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지원
- 말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과 제주축산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 산업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대
- 경주마, 제주마, 비육마, 승용마 등 용도별 소득 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9개소	700,000	-	350,000	-	35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마사개보수, 바림시설 목책 위장머신 트레일러 장비 등 말생산기반시설
 - 마필 사양관리, 조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우선 지원하며,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는 후순위 지원(※ 개소당 50,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말 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 승마장 등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가. 사업목적

- 말 사육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명마 생산기지 선도적 역할 수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속적인 말 사육환경 개선으로 말 생산·육성·관리 능력 극대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116,700	-	70,000	-	46,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말사육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련시설,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 승마시설 등 지원
- 사업대상: 말 생산농가, 말생산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승용마) 말 등록내역, 토지 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 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36 말 연관제품 소비확대 홍보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제주산 말 연관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말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우수성 홍보 방안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말 연관제품 소비 촉진 홍보·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마육 시식행사, 신제품 홍보 등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식	23,000	-	20,000	-	3,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말 연관산업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행사 지원
- 지원대상: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제주마생산자협회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완료 보고
- 제주시장은 제출 서류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37 제주 말산업거점 기반 농가역량 강화 [제주시]

가. 사업목적

- 말산업 수요지역의 요구 및 사육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주형 모델 발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육지부 말산업 수요를 파악하여 제주 말산업 거점기반 역할수행
- 말사육농가의 경영·사육·운영 역량강화로 말산업 기반 경쟁력 확보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0,000	-	5,000	-	5,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업내용 : 육지부 말산업 수요지역 방문 및 시찰비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말 작목반)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완료 보고
- 제주시장은 제출 서류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가. 사업목적

- 말을 테마로 한 축제를 진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관심 제고 및 말 연관 산업의 영역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현마공신 김만일의 고향 제주 의귀리를 주제로 한 축제 개최 지원
- 내실 있는 축제 준비로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30,000	-	15,000	-	15,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의귀 말축제 개최 지원 등
- 사업대상: 의귀리마을회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의귀리마을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제출서류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양돈산업 육성

1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매년 발생하고 있는 양돈장 화재에 대응하여 노후화된 양돈장 전기 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발생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기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발생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가 경제적 피해 최소화
- 화재에 대한 농가 재해예방 인식 고취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 종사자의 안전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식	81,000	-	81,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취약 및 노후화된 전기시설 및 전기설비 적정여부 등 종합 정밀점검,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긴급복구 소모품 비용 지원 등
- 사업대상: 제주양돈농협
 - ※ 양돈장 전기안전 미점검 농가 및 노후 양돈장 등 긴급점검이 필요한 농가 우선 선정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사업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수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다.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개소 내외	1,905,914	571,774	381,183	571,774	381,183	
제주시	5개소 내외	1,486,610	445,983	297,322	445,983	297,322	
서귀포시	5개소 내외	419,304	125,791	83,861	125,791	83,861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설치 지원 등
- 지원축종: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곤충, 양봉, 말사육농가 포함)
- 지원비율: 기금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FTA 기금)융자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바. 세부요령: 2026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3 축사시설 현대화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주요국가간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3개소	3,978,801	-	-	3,177,441	801,360	
제주시	5개소	2,143,750	-	-	1,715,000	428,750	
제주시(25이월)	3개소	1,617,551			1,288,441	329,110	
서귀포시	5개소	217,500	-	-	174,000	43,500	

라.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 지원대상

1) FTA기금(중·소규모)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다만,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2) 이차보전(대규모)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다만,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확인
- 양봉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지원비율: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마. 세부요령: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4 기후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안전기반 구축을 통한 기후재난 대비 및 축산사업장 피해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폭염·폭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 화재·질식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안전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사전 재해 예방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0개소	600,000	-	300,000	-	30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1개소당 최대 보조금 지원액은 3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냉난방기, 물탱크, 비상발전기 등 기후재난 대비에 필요한 축산농장의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지원(가입증명서 제출)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5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및 시설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기후재난(폭염, 폭우 등) 및 화재·질식사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급격한 기후변화, 화재·질식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온도조절 장치 및 전기시설 개보수 등 지원으로 사전 재해 예방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8개소	160,000	-	80,000	-	8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냉난방기, 쿨링패드, 급수시설(물탱크), 발전기, 화재경보기, 전기시설 개보수, 면역력 증강 등 기후재난 대응과 생산효율 증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대상: 축산농가, 법인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서귀포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5 양돈장 화재예방 시설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양돈장 화재 예방시설 지원을 통한 화재 발생 최소화로 경영 안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돈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 시설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7개소	116,600	-	70,000	-	46,6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1개소당 최대 보조금 지원액은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화재안전지킴이, 노후 전기시설 교체, 자동 확산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최근 3년이내 화재 발생 농가(화재증명원 제출)
- 2순위) '24·25년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 이행 농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 3순위)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가입증명서 제출)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양계 가금 산업 육성

1 도계장 시설보완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닭고기의 위생적인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심축산물 공급함으로써 제주 가금산업 경쟁력 확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 보완을 통한 식품 안전성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선진 도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업체 경영안정
- 도계 부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27,900	-	76,700	-	51,2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위생적인 가금류 도계를 위한 시설 전반 및 냄새저감시설
- 지원대상: 닭 도축장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 업체(법인)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2 도계장 폐기물 처리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도계장의 주요 악취발생 요인인 부산물 등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악취발생 저감을 통한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유지로 가격안정을 통한 축산업 발전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67,000	-	100,000	-	67,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닭 도축시 발생하는 부산물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닭 도축장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도계업체(법인)는 전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 도계수,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공모절차 제외 사업)
-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 증빙서류: 랜더링업체 통장,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처리 실적 등

3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급증
- 제주산 축산물의“안전&고품질”을 부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등급판정 축산물 유통확대를 통하여 품질 차별화
- 제주산 등급판정 닭고기에 대한 브랜딩 강화로 판매망 확충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2개소	28,350	-	28,35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일부 지원(마리당 10원)
- 지원대상: 닭 도축장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도계업체(법인)는 전년도 도계수, 등급판정수,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공모절차 제외 사업)
-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닭 도축장별 전년도 도축두수, 등급판정 두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배분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 증빙서류: 등급판정(확인) 내역서, 수수료 청구서 및 지급 영수증, 등급판정 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 통장사본 및 단체등록증 등
- 보조금 예산 소진 시 수수료는 참여업체(또는 농가) 부담

4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기존 노후화된 가금농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 여건 조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금농장의 노후 된 전기·환기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보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41,700	-	25,000	-	1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1개소당 최대 보조금 지원액은 12,5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계사 개보수 및 장비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농가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 농가(법인)은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5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고품질 계란생산 지원을 통한 제주산 계란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부가 고품질 등급판정란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계란 등급 판정란 생산 확대를 통한 고품질 계란 생산으로 제주도내 생산 계란 경쟁력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0만개	10,000	-	1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고품질 계란 출하장려금(5원/개)
- 지원대상: 등급판정란 유통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와 계약하여 등급란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 포함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계란등급 확인서, 집하장과 농가 납품 계약서 등)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신청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 생산농가로 입금된 내역을 반드시 확인)
 - ※ 사업비 집행방법은 제주시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생산농가

양봉 곤충 기타가축 육성

1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전국양봉대회에 참여하여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양봉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
- 제주산 양봉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봉산물 우수성 홍보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45,680	-	41,480	-	4,2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전국양봉대회 참가 및 양봉산물 소비촉진 판촉, 언론매체 홍보 등
- 지원대상: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완료 실적 제출

2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을철 꿀벌응애류 및 월동 꿀벌 피해 발생 예방
- 양봉농가 회생지원 및 피해예방으로 농가 경영의욕 고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이상기온 및 꿀벌응애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생산기반 회복과 월동 꿀벌 피해예방을 위한 사료를 지원하여 양봉산업 기반 유지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4,448박스	378,000	-	378,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양봉농가 사료 지원
 -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월동대비 사료 추천
- 지원대상: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수혜자: 양봉농가)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축산사업 추진계획 공모 신청(보조사업자 → 도)
- 자체 선정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도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혜농가 확정 통보(도 → 보조사업자)
- 월동사료 공급 및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정산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실적보고서 심사 및 정산결과 확정 통지(도 → 보조사업자)

3 양봉 입식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꿀벌 폐사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회생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벌꿀의 경영안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34군	116,700	-	70,000	-	4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양봉 입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사업수혜자: 양봉농가)
 ※ 수혜자 요건: 양봉농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양봉 자조금('25년) 납부 농가 우선 지원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사업계획서에는 봉군 구입 및 보급계획(사업시행 일정, 농가분양계획 등) 포함
- 양봉 입식 희망 농가 사업 신청서 제출(사업수혜자 → 도)
- 보조금 교부 및 농가 신청 내역 송부(도 → 보조사업자)
- 사업 수혜자 선정 및 사업 물량 배정(보조사업자 → 사업수혜자)
 ※ 재해보험 가입, 양봉교육 이수 등 고려하여 수혜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도 승인 必)
- 사업수혜자 자부담금 납부 및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사업수혜자 → 보조사업자)
- 봉군 공급 및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정산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실적보고서 심사 및 정산결과 확정 통지(도 → 보조사업자)

가. 사업목적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중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
- 신 축산소득원 발굴로 영세 양봉업을 고소득 창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판로개척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중봉(여왕벌) 육성에 필요한 화분(꽃가루) 도입으로 품미·향취 꿀 생산 및 생산·개량된 중봉을 도내 양봉농가에 보급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계	12,448군	233,400	-	140,000	-	93,400	
제주시	8,000군	150,000	-	90,000	-	60,000	
서귀포시	4,448군	83,400	-	50,000	-	33,400	

※ 1군당 화분 2kg 내외, 군당 사업비 18,750원 내외(화분떡 구입시는 화분 지원기준에 맞추어 군당 공급수량 조정)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중봉(여왕벌) 육성에 필요한 고품질화분 구입비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 사업수혜자: 양봉농가(양봉등록농가 우선지원)
 -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 또는 등록대상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물량 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및 화분제품 선정 요령
 - 수입 화분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검역기관에서 검사합격 후 통과된 제품을 공급
 - ※ 꿀벌 노제마 등 질병 방역차원에서 방사선 처리된 화분제품 권장
- 화분공급시기: 이른 봄 꿀벌육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기 공급
- 화분공급가격이 지원단가 이하로 결정 시 인하된 가격으로 보조 비율을 적용하고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따른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24년 가축통계 자료 등을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시 화분 추가 구입가능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사)한국양봉협회(각 시지부)를 통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5 전면 소초광 지원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전면 소초광(꿀벌집)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벌꿀생산 유도
- 영세 양봉업을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발굴 고소득 창출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소비의 단점을 보완한 전면 소초광 구입지원으로 고품질 벌꿀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3,344군	166,800	-	100,000	-	66,800	
제주시	6,672군	83,400	-	50,000	-	33,400	
서귀포시	6,672군	83,400	-	50,000	-	33,400	

※ 1군당 5장 내외, 군당 사업비 12,500원 내외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전면 소초광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 사업수혜자: 양봉농가(양봉등록농가 우선지원)
-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 또는 등록대상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물량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따른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24년 가축통계 자료 등을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시 전면 소초광 추가 구입가능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사)한국양봉협회(각 시지부)를 통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가. 사업목적

- 양봉농가의 기자재 지원으로 작업시간 단축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 지원으로 영세한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개소(96대)	250,100	-	150,000	-	100,100	
제주시	1개소(49대)	133,400	-	80,000	-	53,400	
서귀포시	1개소(53대)	116,700	-	70,000	-	4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탈봉기, 채밀기, 리프트시설, 화분건조기, 벌통 등 양봉기자재 구입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 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양봉협회 서귀포시지부
 - 사업수혜자: 양봉농가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 수혜농가 우선순위
 - 양봉산업(종봉생산개량, 전면소초광 지원,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
 - 양봉 기자재 중 탈봉기, 채밀기 신청농가 우선지원
 - 양봉농가등록 신청된 농가
- ※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및 양봉농가 미등록된 농가는 후순위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 또는 등록대상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말벌 퇴치장비 (행정시)

가. 사업목적

- 말벌 퇴치 장비 및 스마트센서 장치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벌 퇴치 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개소	3,400	1,000	1,000	-	1,400	
제주시	1개소(10대)	1,700	500	500		700	
서귀포시	1개소(10대)	1,700	500	500	-	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말벌 퇴치 장비 및 스마트센서 장치 구입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 (사)양봉협회 제주시 지부, (사)양봉협회 서귀포시지부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의 포장을 규격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및 제주 청정벌꿀의 이미지 개선
- 제품 포장재에 제주산 양봉산물의 성분 표기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관로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 우수성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계	5,688군	62,000	-	62,000	-	-	
제주시	2,936군	32,000	-	32,000	-	-	
서귀포시	2,752군	30,000	-	30,000	-	-	

※ 1군당 6세트 내외, 1군당 10,900원 내외(군당 기준으로 통일하여 지원)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양봉농가에 포장박스 및 제품 용기 구입·보급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 사업수혜자: 양봉농가(양봉등록농가 우선지원)
-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 또는 등록대상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물량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따른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24년 가축통계 자료 등을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시 포장재 추가 구입가능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사)한국양봉협회(각 시지부)를 통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가. 사업목적

- 제주산 벌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양봉농가 우수벌꿀 검사비 및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꿀 등급제도 조기정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벌꿀 인증으로 고품질 제주 양봉산물 생산장려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식	65,500	-	65,5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우수벌꿀 등급판정 비용 및 인센티브 지원
※ 검사결과 확인 후 인센티브(장려금 및 필요물품 등) 지급
- 장려금 기준

(단위: 천원)

구분	1+등급	1등급	2등급	비고
1드럼 당	700	300	200	검사비 포함

○ 사업대상

- (보조사업자)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 (사업수혜자) 등급판정 신청 양봉농가, 등급판정 대상업체 등

바. 행정사항

-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로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수혜자는 4~6월 경 사업량 접수(별도 공고)
- 꿀등급판정서 또는 시험성적서로 등급 또는 규격검사 결과확인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이행

10 기후위기 대응 양봉 저온저장고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고온지속으로 양봉산물 및 물품 부패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혹서기 부패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영세한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83,400	-	50,000	-	3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외 사항은 추가 자부담 가능(면적 증가 또는 기타 사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금액 자부담에 포함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면적: 10m² 이내)
- 지원대상: 양봉등록농가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단가: 8,500천원(면적: 10m² 내외)
 - ※ 지원 외 사항은 추가 자부담 가능(면적 증가 또는 기타 사유), 부가 가치세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금액 자부담에 포함
- 지원대상: 양봉등록농가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 대상자 우선순위
 - 양봉기자재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최근 3년간)
 - 전업 양봉농가 우선 지원(농업경영체 상)
 - 신청자 소유 부지 또는 건물 내부에 설치 시 우선 지원
 -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양봉)
 -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 등급판정 신청 농가 가산점
-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증, 신청부지 토지등기부등본(건물 내 설치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근저당권 또는 지상권 등이 설정된 경우, 한국농업기계 목록집에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본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가 아닌 경우), 정부 또는 도지사, 시장 표창장(이외 제외), 견적서(단일 품목인 경우 2인 견적 필요, 한국농업기계목록집에 있는 제품일 경우 제품명 견적서 표시여부 필수 확인)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 또는 등록대상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1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인센티브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꿀 등급제도 시행에 따라 꿀 등급판정 대상업체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등급판정 대상업체 지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0,000	-	10,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꿀 등급판정 대상업체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우선 지원
- 지원대상: 꿀 등급판정 대상업체 또는 지정 예정업체
 - ※ 지정 예정업체는 지원 후 1년 이내 등급판정 대상업체 미 지정 시 보조금 환수 등의 보조조건 명시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 또는 등록대상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2 토종벌꿀 명품화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제주(서귀포시)지역에만 생산되는 토종(송악)벌꿀의 우수성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과의 차별화를 통한 명품화로 농가의 위상 정립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포장용기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고품질 특산물 개발 및 판로 다각화

다.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식	20,000	-	18,000	-	2,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포장용기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한국한봉협회 서귀포시지부
- 지원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완료 실적 제출

13 곤충 사료화 지원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천연 향생물질 함유 곤충 사료 급여로 가축 생산성 및 안정성 향상으로 곤충산물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업곤충 활용도 증진을 통해 곤충 및 축산농가 상생 발전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1개소	285,000	-	171,000	-	114,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 곤충을 활용한 사료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사료제조업 등록된 곤충사료 직접 생산·공급 가능 업체
 - 사업수혜자: 곤충사료 활용 축산·양어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농가별 공급계약서, 2025년 생산·공급 증빙자료 등 해당 시 추가 제출
- 자체 선정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도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및 곤충사료 구매 농가 모집(보조사업자 공모)
- 곤충 사료 구매 계약 및 납품 요청(수혜자 → 보조사업자)
 - 사업수혜자 자부담금 납부
- 사료 공급 및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정산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실적보고서 심사 및 정산결과 확정 통지(도 → 보조사업자)

14 제주 곤충산물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곤충의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유통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곤충산업에 대한 도민과 소비자의 인식 제고로 소비 기반 확대 및 유통 활성화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30,000	-	3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곤충산업 국내·외 선진 우수 사례 조사 및 기획보도·홍보
- 시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바. 행정사항

- 곤충산업 홍보 세부계획 수립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의뢰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협약사 계약체결,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결과 보고서 검토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비 정산 처리

15 미래 친환경자원 곤충 산업화 [행정시]

가. 사업목적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친환경자원인 곤충산업의 산업화 모델을 확립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곤충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축산 지원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4개소	366,700	-	220,000	-	146,700	
제주시	1개소	300,000	-	180,000	-	120,000	
서귀포시	3개소	66,700	-	40,000	-	2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사육시설 개보수, 시설·장비·기자재 등 지원
- 지원대상: 곤충사육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항목별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후 필요성, 타당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화 상정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16 곤충 산업화 지원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친환경·저탄소 산업인 곤충산업의 산업화를 통한 국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곤충사육 농가의 사육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400,000	120,000	160,000	-	12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2028. 12월
- 사업내용: 곤충 산업화 추진을 위한 건축비, 시설비, 기자재 등
- 지원대상: 곤충사육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지원제외: 무허가 시설 또는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 필요서류: 곤충업 신고 확인증, 지방세·국세 납부 증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부지확보 증빙서류, `24~`25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은 취급 불가), 견적서, (법인인 경우)단체소개서, 재무제표, 정관 등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7 곤충산업 시민인식 확산 시범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곤충이 친환경 축산자원으로써 고부가가치화 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교육 및 체험학습 지원으로 곤충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곤충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4,300	-	10,000	-	4,3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학생 시민 대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대상: 곤충사육 농가(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곤충 관련 단체 및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8 기타가축농가 시설장비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기타가축 농가의 시설·장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타가축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6,700	-	10,000	-	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기타가축 시설·장비·기자재 등 지원
- 지원대상: 주요가축(한·육우, 젓소, 돼지, 닭)을 제외한 기타가축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9 기타가축(양계, 젓소 등) 시설, 장비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기존 노후화된 가금농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도모
- 기타가축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기타가축(양계, 염소)을 미래성장 선도 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6,700	-	10,000	-	6,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사육시설 개보수,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기타가축(양계, 젓소, 염소 등) 사육농가
 - ※ 가설건축물 등인 경우 사업내용에 따라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 될 수도 있음.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축산물 유통 활성화

1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현대화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친환경 축산물 먹거리 산업을 통한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으로 고부가가치 식육가공산업 육성
- 대기업의 저렴한 가격과 대량공급에 대응하여 도내 축산물 상품 생산업체의 가공·포장 자동화 라인 설비를 확충으로 경쟁력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주산 우수 축산물가공품 생산체계 구축
-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주형 제품 개발로 틈새시장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5개소	250,000	-	150,000	-	10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품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 육가공 기계 장비, 마케팅을 위한 포장시설, 노후 장비 교체, 시설 내 온습도 조절시설 등
- 지원대상: 축산물 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체 포함)
 ※ 우선지원: 제주산 축산물 타시도 반출 또는 수출실적 우수업체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첨부서류: 제주산 축산물 타시도 반출 또는 수출실적(해당 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현장확인 및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추진상황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 도축장 노후 위생시설 개선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소, 돼지 등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축장 노후 위생시설 또는 필요 설비를 확충하여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국 최고의 제주산 축산물 생산·공급에 걸 맞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운영
- 안정적인 도축시설 운영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판로확대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352,000	-	676,000	-	676,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도축 설비, 폐기물(폐수) 처리시설, 도축라인 보완 등
- 지원대상: 포유류 도축장(제주축협, 제주양돈축협)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업체 현황, 과거 도축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 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효과 등 계획 검토 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제출

3 도축 폐기물 감량화(25년 이월)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의 절감비용으로 폐기물(폐수슬러지, 축분, 고형물 등) 감량화설비 도입 필요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통한 도축장 경영안정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감량화 설비 도입으로 함수율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처리비용 절감 기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1,286,800	-	725,000	-	561,800	
'25년 집행실적	288,000	-	190,970	-	97,030	선금금 등
'26년 집행계획	998,800	-	534,030	-	464,770	전년 이월분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5. 2. ~ 2026. 12월
- 사업내용: 도축장 폐기물 감량화 및 악취저감 시설 지원
- 지원대상: 제주축산업협동조합(축산물공판장)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은 본 사업이 이월사업임을 감안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상반기 이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제주축협에서는 사업완료 후 선금 포함 총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회계감사 보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4 제주 도새기 축제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효과 제고 및 청정제주 돼지 브랜드의 세계화·관광상품화를 통한 축산업 친환경이미지 강화와 제주경제 발전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돼지고기 우수성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확장으로 홍보 효과와 제주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축제로 발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260,000	-	130,000	-	130,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 도새기축제 행사 지원
- 지원대상: 제주양돈농협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도지사는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제주양돈농협 대상자 확정(※공모절차 제외 사업)
- 제주양돈농협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
- 제주양돈농협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추진상황 도지사에게 보고
- 제주양돈농협은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가. 사업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RE100 인증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축산분야 저탄소 에너지 전환 모델 제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축산 구현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 RE100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을 통한 다양한 축종으로 확대 유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9개소	90,000	-	90,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RE100 인증을 위한 전기요금 일부 및 인증 후 필요한 홍보·운영 물품비(소모성 물품, 홍보비 등)
- 지원대상: RE100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사업장
 - ※ 신규 인증 사업장 우선지원, 계약된(사용) 전력량 등 고려하여 사업비 배분, 사업장별 최대 1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첨부서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계약서 등 RE100 인증을 위한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6 축산분야 RE100 인증시설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하여 청정한 방법으로 가축사육을 통한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축산 경영 기반 마련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지원을 통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축산분야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실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축산시설에 보급하여 청정 축산환경 조성 및 저탄소 축산물 생산 체계 확립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75,000	-	45,000	-	3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RE100 인증을 희망하는 또는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사업장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현장확인 및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추진상황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7 제주산 축산물 홍보 (제주시)

가. 사업목적

- 한·미, 한·EU 등 FTA로 인한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장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2,300	-	20,000	-	2,3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홍보물 설치비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목적

- 제주시 축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운영 지원을 통한 축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시 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소비촉진판매 행사지원을 통한 품질 우수성 홍보 및 수급안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66,700	-	150,000	-	16,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시 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소비촉진행사 및 홍보 지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9 축산물 가공장 시설 보완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축산물 가공업체 작업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화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HACCP 유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4개소	66,700	-	40,000	-	2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HACCP 인증 및 유지를 위한 작업장 내 시설보완, 위생기기 구입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0 축산물 유통안전화를 위한 냉장운반 특장 차량 (제주시)

가. 사업목적

-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도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축산물 유통과정의 온도관리 강화로 축산농가 및 유통업체 피해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비자의 식품안전 의식 향상에 따라 축산물 운송 과정에서의 신선도와 위생 관리 중요성 강화로 전 유통단계에서 품질과 안전성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50,000	-	25,000	-	25,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냉장운반 특장차량 지원
- 지원대상: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1 가금류 가공 유통 시설개선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가금관련 가공·유통 시설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높여 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및 위생·안전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6개소	307,830	-	184,698	-	123,132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품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 가금류 육가공 기계 장비 및 제품포장시설 등
- 지원대상: 가금 취급 식육포장처리업·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2 한우브랜드 포장재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한우 부산물(사골, 잡뼈, 꼬리) 및 비선호 부위 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의욕 고취 및 축산업 발전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 가공품 제작 포장재 지원으로 제주산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장려

다.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6,700	-	10,000	-	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한우 부산물 및 비선호 부위 가공품 제작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은 서귀포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은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포함 보조금정산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가축분뇨 · 냄새 관리

1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자연순환 목적으로 양돈분뇨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나 목장지 등에 집중살포 되면서 냄새유발과 환경오염 등 청정제주 가치 훼손 우려
- 정화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청소용, 안개분무용, 조경용 등으로 재이용하여 지하수·환경오염 우려 불식 및 환경친화적 양돈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돈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액비살포 중심에서 고도정화 처리 후 재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 성장 도모

다.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7개소 내외	2,202,240	785,543	872,558	544,139	
당 해	5개소 내외	1,365,000	546,000	682,500	136,500	
이 월	2개소	837,240	239,543	190,058	407,639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전년 이월 2개소는 기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최종 집행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및 정화처리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 설치
 - 부대시설: 전기승압, 액비화시설(저장조 포함), 슬러지 처리용 콤포스트 및 감량기, 고액분리기 등

※ 시설·장비(콤포스트, 감량기, 고액분리기)에 따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업체 및 재활용업체
- 액비화 시설을 가동 또는 가동예정 중인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 및 젖소농가
 - * 양돈농가인 경우 3,000두 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액비화 시설을 가동중인 양돈단지 내 공동 정화처리시설 희망 양돈농가 협의회 등

※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 기준 등 별도 자체 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원비율: 지방비 4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조건: 연리 0.7%, 3년 거치후 5년 균등 상환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세부추진계획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정화처리 공법 및 수질검사 성적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입금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대상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 등의 착공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
 - 대상자선정 후 2개월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계(가축분뇨법에 따른 인허가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사진, 관련 증빙자료 등의 준공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완료 보고
 - ※ 완료보고시,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시 환경부서에서 인허가 변경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처리 수질기준 미 충족되거나 미 가동 시 보조금(융자 포함) 환수조치 됨
- 도지사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양돈분뇨 관리 정책기조를 액비화 후 살포 → 정화처리 재이용으로 전환('19.2.15)하여 추진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및 양돈농가의 정화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으로 재이용 참여 촉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돈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액비살포 중심에서 고도정화처리 후 재이용을 통한 철저한 재활용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10개소 내외	525,000	315,000	-	21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정화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필터, 약품 및 정화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모성 물품 등 지원
- 지원대상: 신청 공고 시 기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이용하고 있는 가축분뇨 관련 업체 및 농가

※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 기준 등 별도 자체 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세부추진계획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정화처리 가동실적, 소모성 물품 등 최근 구매내역 등 첨부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지원받은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수불대장 작성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 도지사는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이행
- ※ 특별한 사유없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미가동 하거나 소모성 물품을 미사용하여 방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또는 환수 조치

3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적체된 가축분뇨 슬러지가 농장 내 악취와 환경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 유도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양돈 산업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슬러지 적기 제거작업으로 실질적 악취저감 효과 유도 및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내외	150,000	90,000	-	6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농장 내 적체된 슬러지 제거에 필요한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방식의 재료비(연화제, 미생물제제 등) 및 작업비 등 경비 지원
- 지원대상: 양돈농가
 - 양돈장 악취관리 최종 컨설팅 이행 결과(상, 중 농가에 한함) 고착 슬러지 제거 필요농가 우선 지원

※ 전체물량 중 돈사내 슬러지가 50% 이상이어야 하며, 저장조내 슬러지만 제거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 기준 등 별도 자체 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세부추진계획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고착 슬러지 제거할 사업량에 대하여 정확히 실측하여 사업비 산정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산출내역, 슬러지 제거 방식 및 산정기준 등의 착수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사업 전·중·후 악취측정 실시 및 결과 제출

○ 도지사는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이행

※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 유무에 대한 증빙이 어렵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미비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또는 환수 조치됨

가. 사업목적

- 양돈장 밀집지역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 중심,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사전방제 강화 및 민원 발생 즉시 현장방제를 위한 24시간 악취방제 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민원 취약 축산사업장 집중관리 및 주요 발생원 모니터링 실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식	500,000	-	50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축산사업장 주변 방제, 냄새저감제 공급 및 축산사업장 상시 예찰,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종균 구입 및 운영
- 지원대상: 제주양돈농협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5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시스템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추진
- 주요 악취발생원별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돈사, 분뇨처리장, 퇴비사 등)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 개선 시설을 지원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악취발생원별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시설 도입을 통한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실현
- 현장을 고려한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악취민원 해결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관계 발전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679,000	-	407,000	-	272,000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지원대상: 양돈농가
 - 양돈장 악취관리 최종 컨설팅 이행 결과(상, 중 농가에 한함) 악취저감시설 설치 필요농가 우선 지원

※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 기준 등 별도 자체 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 무창돈사 개·보수 시설 지원: 밀폐형 구조물, 기계식 환기장치 등
- 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시설 지원
- 돈사바닥 개보수(올슬랏), 돈사 내부환기시설 및 냉난방기 등
- 악취저감시설 지원: 바이오커튼(차광막+안개분무), 세정습식탑, 흡착탑, 바이오 필터, 대기편승·확산 악취제어장치, 액비순환시스템, ICT 악취측정장비 등 악취저감·모니터링에 유효한 시설

※ 사업지원 방향: 시설 밀폐화 + 악취저감시설설치 병합지원
단, 기존 무창화 및 밀폐화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 단독 지원가능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대상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 등의 착공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가. 사업목적

- 커피박 폐자원을 축산농가 재활용(깔짚 등)으로 축산사업장 악취저감 및 생산비 저감 효과 증대
- 커피박 등 폐자원을 축산농가에 활용하는 환경보전 발굴 사례로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커피박 폐자원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청정제주 이미지 향상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개소	15,000	-	15,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커피박 이용 축산농가 재활용(깔짚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대상: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완료에 따른 냄새저감 효과 분석 및 정산검사 이행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냄새저감 등 환경개선 및 농가 자구노력 교육·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종별 주요 악취발생원 관리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농가 자구노력 유도를 통한 근원적인 악취저감·관리 추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4식	51,300	-	51,300	-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개선 교육	1식	6,100	-	6,100	-	-	
축산환경개선 동영상 제작	1식	4,200	-	4,200	-	-	
축산사업장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	1식	1,000	-	1,000	-	-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환경 모델 조성	1식	40,000	-	4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축산환경개선교육 및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 등
- 교육대상: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가축분뇨처리 업체 등

가.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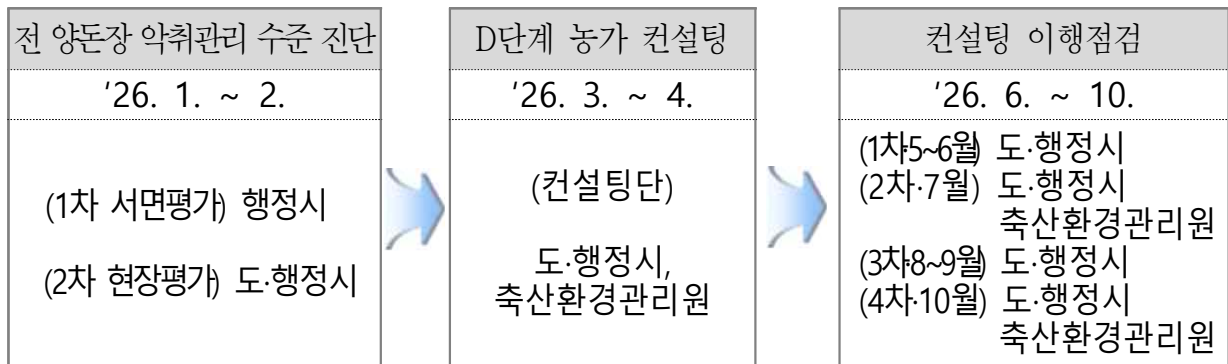
-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상향화를 위한 악취관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사후관리로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4단계(A~D) 분류 및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차등적 행정지원으로 농가 악취관리 동기부여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비예산

라. 2026년도 시행계획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25년 악취관리 컨설팅 결과 및 내부자료(양돈장 실태조사,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자료 등) 활용
- (2차) 현장평가: 서면평가 결과 D단계 농가(현장평가 후 D단계 확정)
※ 평가항목 포함한 세부평가기준 별도 수립하여 평가추진

○ 컨설팅 및 이행점검

- 컨설팅 대상: 악취관리수준 진단 결과 최하위그룹(D그룹)
- 컨설팅 내용: 양돈농가 현장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이행여부·개선효과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 미흡농가 중 컨설팅 거부 등 불성실한 이행 농가 점검강화 및 페널티 적용

9 가축분뇨처리 지원 (행정시)

가.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로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계	기 금	지방비	용 자	자부담	
합 계	3개사업	12,352,769	5,577,054	2,506,554	3,045,885	1,223,276	
축산악취개선	제주시	6개소	1,910,000	382,000	382,000	955,000	191,000
	제주시 (전년이월)	1개소	87,769	17,554	17,554	43,885	8,776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제주시	6개소	120,000	60,000	60,000	-	-
공동자원화 (에너지)	제주시	2개소	7,245,000	3,622,500	1,449,000	1,449,000	724,500
	제주시 (전년이월)	2개소	2,990,000	1,495,000	598,000	598,000	299,000

마. 세부요령: 2026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시)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분뇨처리의 어려움 해소
- 시설의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 극대화
- 시설의 기술진단 및 노후설비 등의 보완을 통한 적정 가동상태 유지 및 처리효율 개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처리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민간전문업체 위탁 관리
-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결과 점검 및 보고
- 관련법에 의한 기술진단 및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가동률 제고 도모

다.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항 목 별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전기안전 및 약취진단·컨설팅
합 계	2개소	8,151,320	5,632,000	1,620,000	800,000	99,320
제 주 시	1개소	5,977,000	4,134,000	960,000	800,000	83,000
서귀포시	1개소	2,174,320	1,498,000	660,000	-	16,32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약취저감 및 시설개선, 기술진단수수료, 전기안전진단, 작업환경 측정 컨설팅 등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 강화
-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감사 실시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서귀포시)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설 필요
-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기능개선과 지속적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로 합리적 처리공정 및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
-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을 극대화를 통한 경제성·환경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기본방향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기술지원 및 설계)을 받도록 계획되어 원활한 추진과 최상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하여 추진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1개소	5,568,000	5,368,000	200,000	-	-	

라.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서귀포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세부실시요령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준수

마. 행정사항

- 서귀포시장은 수탁자(한국환경공단) 및 실시설계 용역사의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1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경영안정화 [행정시]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처리단가 증가로 인하여 농가의 분뇨처리비 부담 가중 등 농가 자체처리 증가 및 집중화 처리율 감소 방지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율 증대 방안 마련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관리되는 공공(동)처리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보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율 확대에 따른 가축분뇨 안정화 처리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합 계	7개소	787,000	-	472,000	-	315,000	
제주시	4개소	500,000	-	300,000	-	200,000	
서귀포시	3개소	287,000	-	172,000	-	115,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 지원내용: 공동자원화 사업장 운영비(악취저감 운영비 등), 소모품 교체 및 장비수리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정산

1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 (제주시)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냄새발생 저감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반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가동률 향상 및 시설운영업체 경영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83,400	-	50,000	-	3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공동자원화시설 운반·살포장비 및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업체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정산

가.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4개소	375,400	-	375,400	-	
제 주 시	2개소	330,000	-	330,000	-	
서귀포시	2개소	45,400	-	45,400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마을운영 및 수익사업 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주변지역의 소득 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등
- 지원대상: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대상 마을에서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세부운영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15 액비저장조 설치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액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장조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적정처리 된 액비살포로 가축분뇨처리 안정성 확보 및 냄새민원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화학비료 대체) 및 환경오염 방지
- 적정 액비 생산 기반 마련으로 부속도 기준 준수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857톤	372,000	-	260,000	-	112,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1개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액 150,000천원

마. 2026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지원단가: 40,000천원/1기)
 ※ 발효 및 폭기로 악취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해야 함
- 지원비율: 지방비 70%, 자담 3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정산

16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 인접 도로변, 관광지 및 인근 마을에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냄새발생 최소화를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근원적 냄새저감·방지 대책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생활민원 해소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조의2(퇴비액비화 기준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159개소	137,000	-	137,000	-	-	
제주시	100개소	130,000	-	130,000	-	-	
서귀포시	59개소	7,000	-	7,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냄새저감용 탈취제 및 미생물제제 공급,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정기적 살포로 냄새저감 추진, 퇴비 부숙 촉진제 공급
- 지원대상: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등
- 지원비율: 정액

바. 세부실시요령

【제품선정】

- 조달구입(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가능한 제품
- 냄새저감제 선정 기준
 - 냄새저감 효능·시험 결과서가 있는 제품
 - 축사, 바닥, 액비, 분뇨 등에 투입·살포하는 제품 등
 - 환경개선사업으로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하는 미생물제제 등 제외
- 퇴비 부숙 촉진제 선정 기준
 - 규격서·시험 결과서가 있는 제품
 - 퇴비 부숙 효과가 우수한 제품
 - 첨가 후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 등

【제품구입 및 공급】

- 행정시장은 냄새 다발지역 농가, 퇴비 부숙 충족이 어려운 농가 등을 파악하여 제품과 수량을 조사하여 공급

사. 행정사항

- 냄새 집중발생 시기 이전 공급 완료하여 민원 사전 예방
- 퇴비 부숙 촉진제 사용 전·후 부숙 판정도 등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
- 냄새저감제, 부숙 촉진제 품질관리 강화 및 수시검사 실시
 - 사료관리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 불시 검사 실시
 - 제품검사 결과 행정처분 해당제품은 공급 중단 및 미사용분 제품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참여 배제

17 축산환경 개선 [행정시]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해충 발생방지를 위한 제품(미생물제제) 농가 공급
- 가축방역, 소독, 사양관리 및 적정 분뇨처리 등과 연계처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126,680톤	633,400	-	380,000	-	253,400	
제주시	100,000톤	500,000	-	300,000	-	200,000	
서귀포시	26,680톤	133,400	-	80,000	-	5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미생물제제 등 구입·제조 공급(※ 톤당 5,000원)
- 제품구입: 생산자단체
- 공급대상
 - 돼지를 제외한 냄새유발 가축: 축산환경 개선제품
 - 돼지: 양돈농협 제조 액상미생물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마. 세부실시요령

【축산환경 개선제품 선정】

- 조달구입(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가능한 제품
- 행정시장은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과 수량을 조사하고, 해당 생산자단체에 확정 통보

【축산환경 개선제품 구입】

- 생산자단체에서는 행정시장이 통보한 내역에 따라 해당제품 구입
-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자부담금을 농가별로 사전 예치하거나, 사업 정산 시 등 사전 납부토록하고 미납자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
- 제품에 대한 지원금액은 혼합하는 사료 톤당 5,000원으로 하며, 제품가격은 생산자단체에서 원가검토 후 현실에 맞게 계약 체결

【축산환경 개선제품 공급】

- 제품 공급은 생산자단체 책임하에 냄새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
- 마을 인접지역, 주요도로변, 냄새민원 다발지역에는 필요시 증량 공급 가능

【양돈농협 제조 액상미생물】

- 양돈농협 액상미생물은 행정시장이 공급량을 확정하고, 액상 미생물 생산시 소요되는 배지 등 재료비·경비를 양돈농협에 지원

바. 행정사항

- 냄새 집중발생 시기 이전 공급 완료하여 민원 사전 예방
- 환경개선제 품질 관리 강화
 - 사료관리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 불시 검사 실시
 - 제품검사 결과 행정처분 해당제품은 공급 중단 및 미사용분 제품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참여 배제
- 행정시에서는 지원된 환경개선제가 농가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자단체와 공급업체에서 수시 모니터링
 - 지원된 제품을 농가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한 업체가 책임, 지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제 제품선정 시 불이익 처분

18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행정시]

가. 사업목적

- 냄새 다발지역 및 유발농가에 대한 냄새저감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청정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축산농장으로서 축산냄새 차단을 위한 시설물 등 설치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개소	283,400	-	150,000	-	133,400	
제주시	4개소	200,000	-	100,000	-	100,000	
서귀포시	2개소	83,400	-	50,000	-	3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악취저감시설·장비, 악취확산방지시설 등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차아염소산 및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 등
 - 악취 및 액비순환 관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승압 등(단, 전기승압만 지원불가)
 - 농장 외부 안개분무시설 지원 불가(단, 포집시설 등 연계한 안개분무 시설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축산농장 및 축산단지 등
 - ※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 기준 등 별도 자체 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 * 양돈장 악취관리 최종 컨설팅 이행 결과(상, 중 농가에 한함) 악취저감시설 설치 필요농가 우선 지원
- 지원비율: 제주시(지방비 50%, 자부담 50%), 서귀포시(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9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행정시)

가.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축산농가 적극 양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조성을 통한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 가축사육시설 보완을 통한 사양 및 환경적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10개소	380,000	-	228,000	-	152,000	
제주시	5개소	250,000	-	150,000	-	100,000	
서귀포시	5개소	130,000	-	78,000	-	52,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으며, 1개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3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농장 개보수 및 조정 관련, 사양 및 환경 개선 시설,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 방역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조]사료 생산 이용

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도 본청)

가. 사업목적

-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조사료 이용확대와 제주지역 수급안정을 위해 타도산 조사료(벧짚 포함) 반입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조사료 위주 사양관리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활용 기반 구축으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5,500여롤	220,000	-	110,000	-	110,000	

※ 운송단가 계약, 자부담 추가투입 정도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타도산 조사료(벧짚 포함) 반입 운송료 일부 지원
- 시행기관: 지역축협 → 타도산 조사료 반입 농가
- ※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및 법인 등 지원 제외
- 지원비율: 지방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1롤당): 40천원 내외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희망 농가 수요조사 후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지역축협에서는 농가별 타도산 조사료 반입(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운송비 지원분을 농가에 지급후 증빙서류 첨부 도지사에게 실적보고
-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확인시 세금계산서, 화물선적확인서 등 확인

가. 사업목적

-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마을공동목장이 탄소흡수원 및 지속가능한 생태축으로서의 역할 수행 함으로써 생태계 연속성 향상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공동목장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를 통해 제주형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원사업 모델 발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157,140	-	157,140	-	-	
'25년 집행실적	109,998	-	109,998	-	-	선금금 등
'26년 집행계획	47,142	-	47,142	-	-	전년 이월분

마. 연구용역 개요

- 과 업 명: 마을공동목장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연구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오홍식 교수)
- 용역기간: 2025. 4. 29. ~ 2026. 4. 28.(12개월)
- 과업의 주요내용
 - 마을공동목장의 가치평가를 통한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대상 마을공동목장 후보지 선정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마을공동목장 대상지 자연자원 및 생태계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계 및 지원사업 모델 발굴 등

바. 행정사항

- 수행기관에서는 본 사업이 이월사업임을 감안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등 관련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행기관에서는 용역기간 중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
- 최종 성과품은 최종보고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후 2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인쇄하여 제출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행정시]

가.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조사료 생산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종자, 기계장비 등 종합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 금	지방비	용 자	자부담
합 계	합 계	5건	7,346,753	2,171,390	3,843,028	105,000	1,227,335
	제주시	5건	4,968,353	1,520,190	2,552,828	105,000	790,335
	서귀포시	4건	2,378,400	651,200	1,290,200		437,000
종자구입	소 계	8,437ha	1,012,433	178,500	428,500	-	405,433
	제주시	3,245ha	389,333	116,800	116,800	-	155,733
	제주(자체)	2,784ha	334,000	-	200,000	-	134,000
	서귀포시	1,714ha	205,700	61,700	61,700	-	82,300
	서귀(자체)	694ha	83,400		50,000		33,400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소 계	78,363톤	4,977,900	1,506,680	2,913,360	-	557,860
	제주시	47,877톤	3,045,600	943,680	1,787,360	-	314,560
	서귀포시	27,856톤	1,765,600	563,000	1,026,000	-	176,600
	서귀(자체)	2,630톤	166,700	-	100,000	-	66,700
기계장비 (경영체)	소 계	6개소	480,000	48,000	144,000	105,000	183,000
	제주시	4개소	350,000	35,000	105,000	105,000	105,000
	서귀포시	2개소	130,000	13,000	39,000	-	78,000
품질관리	소 계	1식	46,000	23,000	23,000	-	-
	제주시	1식	19,000	9,500	9,500	-	-
	서귀포시	1식	27,000	13,500	13,500	-	-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주시	500ha	570,420	285,210	228,168	-	57,042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제주시	500ha	200,000	100,000	100,000	-	-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제주시	500ha	60,000	30,000	6,000	-	24,0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조사료 종자구입, 사일리지 제조비, 경영체 기계장비, 조사료 품질관리, 전문단지조성 등 5건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위: %)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용자조건
사일리지 제조	30	60	-	10	-
종자구입	30	30	-	40	-
기계·장비(경영체)	10	30	-	60	-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사일리지)	50	40	-	10	-
조사료전문단지 조성(퇴액비)	50	50	-	-	-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종자구입)	50	10	-	40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상 종자구입 자부담은 70%이나, 지방비에서 30% 지원

바. 세부 추진요령

-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조

4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유희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개소	646,585	322,413		175,956	148,216	
제주시	4개소	427,782	213,000		140,100	74,682	
서귀포시	1개소 (25 이월)	218,803	109,413		35,856	73,534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 지원대상: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중 농식품부 사업 대상 평가결과 당해연도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장
- 지원비율: (초 지 조 성) 국고 50%, 융자 50%
(울타리설치) 국고 50%, 융자 50%
(경 영 지 원) 융자 8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대상자는 선정평가시 제출된 계획서에 의거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
- 행정시장은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 세부요령은 농식품부 2026년 방목생태 축산농장조성 사업시행지침 참조

5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행정시]

가. 사업목적

- 국내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 조사료 안정적인 공급 기반 조성
- 건조 수확시기가 장마시기와 맞물려 우천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조사료의 활용기반 구축하여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947롤	120,000	-	72,000	-	48,000	
제주시	780롤	100,000	-	60,000	-	40,000	
서귀포시	167롤	20,000	-	12,000	-	8,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랩 및 네트 구입비 일부 지원
- 시행기관: (사)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부포함)
- 지원대상: 조사료 생산농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단가: 120천원/1롤 내외, 네트 200천원/1개 내외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지부포함)은 사업 참여농가 모집 후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필요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사)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지부포함)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서식 1>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등 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 천원)

신 청 자		사육현황		사료작물 재배면적 (ha)	신청물품	신청량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마리수				계	지방비	자부담

※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시 사육마리수,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

6 조사료 물류비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한 운송료 지원으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조사료 대체급여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조사료 물류비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완화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응자	자부담	
계	29,996롤	216,700	-	130,000	-	86,700	
제주시	13,330롤	133,300	-	80,000	-	53,300	
서귀포시	16,666롤	83,400	-	50,000	-	33,400	

※ 운송단가 계약, 자부담 추가투입 정도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제주도내 조사료 운송료 지원
- 시행기관: 지역축협
 - ※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농가(후순위) 및 법인 등 지원 제외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1롤당/350kg 내외): 10천원(보조 6, 자부담 4) 이내
 - ※ 제주시는 예산범위 내 운송 거리별 단가 차등 적용되며, 서귀포시는 일괄 롤당 3천원 보조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분기별로 사업내역 제출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7 조사료 생산농가 기계장비 (제주시)

가. 사업목적

- 조사료 활용기반을 구축하여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도모
- 건조 생산 시 적기에 수확하여 우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감소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조사료 장비 확충으로 초식가축 사육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4개소	80,000	-	48,000	-	32,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 피복기, 적재기) 등
- 지원대상: 조사료 생산 축산농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신청서에 의거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후 타당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목적

- 도내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사료자원화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 오염 사전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감귤박을 사료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활용처를 다양화 함으로써 부존자원 수요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480천포	480,000	-	480,000	-	-	
제주시	200천포	200,000	-	200,000	-	-	
서귀포시	280천포	280,000	-	280,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감귤박 TMR(F)사료 포대당(20kg기준) 1,000원 지원
- 시행기관: 지역축협
- 지원대상: 한우·젓소·말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공급 예정농가, 연간 소요물량, 총 소요액 등 포함
- 행정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분기별로 공급내역을 행정시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TMR(F)사료가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수시 확인
- 지역축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9 TMR 사료배합기 (제주시)

가. 사업목적

- 한미 FTA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TMR 사료 생산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내 활용 가능한 부존자원을 사료 자원화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개소	175,000	-	140,000	-	35,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TMR 사료배합기 구입(고정식, 견인식, 레일식 등)
 ※ 구입 장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정보집에 수록된 장비에 한하여 가급적 구입
- 지원대상: 한우·젖소 사육농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지방비 8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제주시장은 제출서류에 의거 현지조사 및 타당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

10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행정시)

가. 사업목적

-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 목장의 활용도 제고 및 특성화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공동목장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공동목장별 여건에 부합한 특성화 개발육성 및 가축사육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6개소	311,200	-	280,000	-	31,200	
제주시	3개소	222,300	-	200,000	-	22,300	
서귀포시	3개소	88,900	-	80,000	-	8,9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방목용 울타리 및 사육 기반시설, 초지보완, 잡목제거 등
- 지원대상: 마을공동목장
- 지원비율: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마을공동목장에서는 사업내용,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행정시장은 신청서에 의거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타당성, 예산배분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완료 및 정산 보고

11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행정시)

가. 사업목적

- 목초지 및 사료작물 포에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히 방제함으로써 해충의 조기구제 및 확산방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 최소화
- 마을공동목장, 축산단지 등 농가별 공동방제 실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260ha	7,000	-	7,000	-	-	
제주시	200ha	5,000	-	5,000	-	-	
서귀포시	60ha	2,000	-	2,000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행정시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목초지 및 사료작물포에 돌발해충 긴급 방제약품 지원
- 지원기준: 25~50천원 이내 지원/ 목초지 1ha당
- 지원비율: 정액(재료비)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돌발해충 발생 즉시 공동목장, 축산단지 등 농가별 약품 지원 및 긴급방제 실시
- 행정시장은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및 방제상황은 신속하게 도지사에게 제출

축산생명연구원 운영

1 한(흑)우 개량 및 제주흑우 보호 육성

가. 사업목적

- 한(흑)우 능력 개량을 통한 우수 종축 및 수정란 공급 체계 구축
- 양축농가 우수 종축 생산을 위한 개량 기초 집단 조성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한우 암송아지 능력검정 우수 집단 조성
- 제주흑우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동결정액 공급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사육기반(정액 생산 노후장비 교체 등)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 자연유산법 및 천연기념물“제주흑우”관리지침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담	
계	7건	1,185,656	337,843	847,813	-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보호육성	1식	372,858	-	372,858	-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암소개량	1식	241,600	120,800	120,800	-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1식	24,000	12,000	12,000	-	
축산물 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444마리 내외	9,686	4,843	4,843	-	
초지 및 장비 운영 관리	1식	227,562	-	227,562	-	
국가유산(제주흑우) 보수정비	1식	286,000	200,200	85,800	-	
가축 유전자원은행 운영관리	1식	23,950	-	23,950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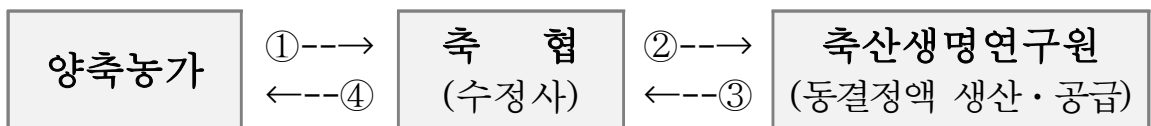
1)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372,858천원(자체사업)
- 사업내용
 - 한우 수정란 및 제주흑우 동결정액 생산 보급 등
 - 제주흑우 우수 후보축 구입 및 유전자 분석 등
 -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를 통한 현대화 시설 구축 등
 - 한(흑)우 송아지 육성 및 사양관리용 사료, 약품, 잡품 등 구입

나) 추진계획

- 한우 우량종축 생산을 위한 번식우 선발
 - 유전체 분석을 통한 우량 암소 집단 조성
 - 우량 한우정액 확보와 개체별 유전능력을 고려 수정란 생산 및 이식
- 한(흑)우 송아지 생산관리
 - 한(흑)우 송아지 외모특징 및 이유시, 6개월령 등 체중 조사
 - 흑우송아지 혈통등록을 위한 DNA검사 실시(연중)
- 한(흑)우 우량종축 구입(국비예산 포함): 4두 내외
- 제주흑우 동결정액 생산·공급(무상)
 - 동결정액 생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생산수량: 1,200본 내외
 - 공급절차



- ① 농가: 제주흑우 정액 지역축협에 요청 ② 축협 제주흑우 정액 축산생명연구원에 요구
 ③ 지역축협(수정사)에 정액 공급 ④ 지역축협(수정사): 농가에 직접 수정

※ **제주흑우 동결정액 공급조건: 스트로 회수 및 분만현황 등 분기별 제출**

- 지역축협(수정사)은 인공수정 후 스트로 회수 및 수량 확인

- OPU(생체난자흡입술)을 통한 농가 우량 한우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생산수량: 300본(농가 공급 300본)
 - ※ 공급수량은 농가신청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신청 접수(지역축협): 2026. 1월(신청서, 유전체 분석결과 첨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전 초음파 진단: 2026. 2월, 8월
 - ※ 유전능력평가를 통한 상위 개체 위주 선정
 - 농가별 동선 등을 고려 추진일정 통보 및 실시: 2026. 3 ~ 10월
(농가 당 2회 실시 - 1회 실시 2주 후 추가 1회 실시)
 - 체외 수정 후 동결 수정란 생산 및 농가 배분: 2026. 6 ~ 12월
(생산 후 2개월 이내 농가 배분)
 - ※ 수정란 이식 개체별 관리(수태율, 도체성적 등)
- 흑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흑한우(F1)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생산수량: 150본(농가 공급 150본)
 - OPU(생체난자흡입술)을 통한 한우 수정란 생산 시 병행 추진
- 제주흑우 보호 육성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및 혈통관리 전산화
 - 제주흑우 사육현황 및 전수조사 실시: '26. 12월
 - DNA분석을 통한 혈통관계 재정립, 교배계획 등 혈통관리 체계 구축: 연중
 - 제주흑우 혈통관리를 위한 자료 조사 및 전산화: 연중

2)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능력 한우 암소 수정란 생산·공급으로 한우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기반 조성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241,600천원(국비 120,800 지방비 120,800)
- 사업내용
 - 고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용 종축 구입
 - 고능력 수정란 생산 재료 및 생산용 실험장비 구입

나) 추진계획

- 수정란 생산 재료 및 고능력 공란우 구입으로 생산 효율성 증대
- 노후 실험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수정란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3)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멸종위기 가축유전자원 제주흑우 보존 및 증식을 통한 개량 기반 구축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24,000천원(국비 12,000 지방비 12,000)
- 사업내용
 - 제주흑우 씨수소 구입 및 영양제, 약품 등 구입

나) 추진계획

- 씨수소 및 사양관리 재료 구입으로 안정적인 동결정액 생산 및 공급
- 멸종위기 제주흑우 가축유전자원 활용한 안정적 산업화 기반 구축

4) 축산물 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량: 444마리내외
- 사업비: 9,686천원(국비 4,843 지방비 4,843)

나) 추진계획

- 검사대상: 축산물이력제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소
- 검사시료 확보: 지역축협 이력제 관리 담당자가 시료 송부
- 검사내용
 -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DNA검사
 - 농가신고내용 검사(모자간 일치 여부 확인)
 - ※ 축산물 이력제 소 사육단계 유전자 검사 세부지침에 의거 검사 수행
- 검사결과 보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5)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초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227,562천원(자체사업)
- 조사료 장비: 3종(트랙터 9대, 스키드로더 4, 부속장비 38종)
- 사업내용
 - 조사료 자체 수급에 따른 사료작물 파종 및 생산, 조사료 장비 운영 등

나) 추진계획

- 조사료생산 및 파종: 50.2ha · 551톤
 - 기간: 수확) '26. 5. ~ 6월, 파종) '26. 10월 중
 - 면적: 50.2ha · 8개 목구(1, 2, 5, 7, 10-1, 10-2, 10-4, 12-1)
 - 생산/파종량: 이탈리아라이그라스 551톤/3,012kg
- 초지보완
 - 기간: '26. 3 ~ 4월, 8 ~ 10월
 - 면적: 76.3ha, 10개목구(3, 4, 6, 8, 9, 10-3, 11, 12-2, 13, 15)
 - 초종: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페레니얼라이그라스
 - 파종량: 4,020kg (ha당 50kg) - 오차드그라스 60%, 톨페스큐 및 페레니얼라이그라스 각 20%

6) 국가유산(제주흑우) 보존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286,000천원(국비 200,200 지방비 85,800)
- 사업내용: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보존을 위한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나) 추진계획

- 개체관리
 - 주요내용: 개체별 명호, 생년월일, 부모혈통, 생산 및 폐사 내역 등
 - ※ 모색유전자 검사는 MC1R 방법에 의해 실시
 -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제주흑우에 대해서는 제주흑우의 품종표준에 따라 표준품종 등록을 위한 심사 실시
 - 체중 조사: 매월 15일 기준 실시
 - 성장단계별: 송아지, 육성우 체중조사
 - ※ 개체별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점검

○ 사양관리

- 월동관리(12월 ~ 익년 3월 / 4개월간)

- 장 소: 축산생명연구원 내 제주흑우 전용축사 및 종모우사 등
- 관리방법: 종모우, 종빈우 격리사육, 육성우, 송아지 격리사육

○ 번식관리(인공수정 및 발정확인)

- 계절번식: 송아지 분만시기를 흑한기를 피하여 특정기간에 분만토록 조절

※ 인공수정: 5월 ~ 10월, 분만: 3월 ~ 8월

- 수정방법: 개체 발정 확인, 체형 보정틀 설치 장소 이동, 정액 주입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 임신진단: 수정 후 21일 전후 발정 확인, 1~2개월 경과 후 직장검사 또는 초음파 장비이용 임신 감정 실시

○ 정액채취 및 동결보관

- 씨수소선발 및 정액생산: 제주흑우 고유의 체형과 모색을 가진 개체 중 15개월령 이상 개체에서 정액 채취

- 생산방법: 인공질법 및 전기자극법에 의한 정액 채취

- 동결 및 보존: 희석액을 이용한 정액 희석, 4℃저온에서 안정화, 급속동결기를 이용하여 동결 후 액체질소 내 보존

7) 가축 유전자원 은행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가축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호·관리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23,950천원(자체사업)

○ 사업내용: 축종별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 시스템 구축 등

나) 추진계획

○ 제주흑우 및 제주재래돼지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연중)

○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료 구입 등

2 고능력 청정 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공급

가. 사업목적

- 우량 씨돼지 공급을 통한 돼지개량으로 고품질 돈육생산 체계 구축
- 고능력 씨돼지 및 액상정액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우량 씨돼지 및 돼지 액상정액 생산·공급을 통한 돼지개량 가속화
- 청정종돈장 유지관리 및 냄새 발생 최소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운영세칙
- 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82호)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담	
계	5건	2,781,932	-	2,781,932	-	
청정씨돼지 생산 및 공급	800마리	1,960,932	-	1,960,932	-	
돼지 액상정액 생산 및 공급	100,200팩	126,000	-	126,000	-	
고능력 원종돈(GGP)도입	60마리	374,000	-	374,000	-	
종돈능력검정	1,200마리	21,000	-	21,000	-	
종돈장 시설개선사업	1식	300,000	-	300,000	-	

마. 2026년도 사업시행요령

1) 청정 씨돼지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1,960,932천원(자체사업)
- 청정 씨돼지 공급: 800마리(4품종: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나)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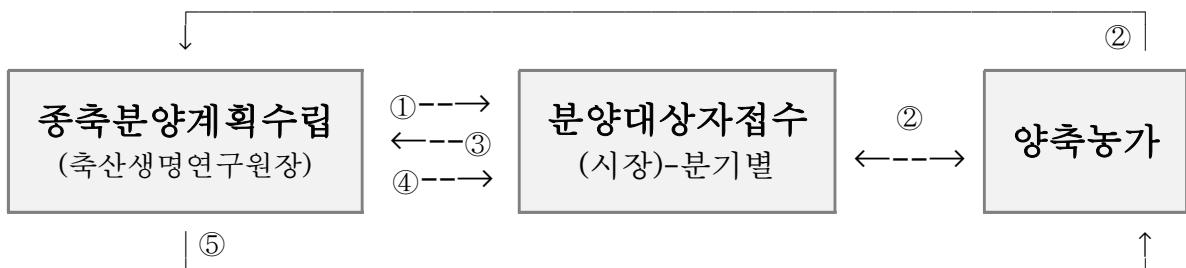
- 분양규격 및 가격

구분	성별	공급기준	분양가격(원)
종돈	암	검정완료돈 105kg내외	전월 제주 일반돼지 평균가격 + 180,000
	수	검정완료돈 105kg내외	전월 제주 일반돼지 평균가격 + 300,000
육성돈	암	체중 50kg내외	300,000
거세자돈	수	체중 20kg내외	130,000

- 분양방법

- 행정시: 분양 신청자 접수 및 축산생명연구원 제출
- 축산생명연구원: 분양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확정) 및 분양

다) 종돈 분양 절차



- ① 종축 분양계획 수립
- ② 종돈 분양신청
- ③ (행정시) 신청농가 명단 확정 결과 통보
- ④ 축산관계 법령위반 등 확인 요청 후 적합농가 확정
- ⑤ 분양에 따른 분양일정 및 인수사상 통보

※ 종돈분양 대상자는 종축 인수 전 해당 대금 입금 후 인수

[서식 1]

종돈 인수 확인서

축종	품종	두 수			인수가격 (원)	분양종돈 개체번호
		암	수	계		
돼지 (종돈)	계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 종돈분양 대상자가 직접 종돈 인수 불가 시 위임장 첨부해야 함.

상기와 같이 분양(매각) 돼지에 대한 성별, 품종, 수량 및 건강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인수합니다.

농장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농장주:

(서명 또는 인)

농장명:

차량번호:

기사성명: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 귀하

종돈 분양 약정서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서 생산된 종돈을 분양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을 “계약자”라 하고, 종돈을 분양받는 자를 “피계약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종돈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1. 분양종돈 내역

품 종	두 수			분양가격 (원)	비 고
	암	수	계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두 록					
버 크 셔					

2. “피계약자”는 종돈을 분양받은 후 “계약자”가 안내하는 종돈관리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피계약자”는 종돈 인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인수자는 분양당일 “계약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 2) 종돈 인수에 따른 운송 및 부대경비를 전액 “피계약자”가 부담한다.
 - 3) 종돈 인수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4. “피계약자”는 분양받은 종돈 중 번식장애 및 종돈 결격 사유발생시 수의적 소견을 첨부하여, 종돈은 인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교환 신청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해당 종돈과 같은 규격의 종돈으로 교환하여 준다. 4개월이 경과되어도 수의적 소견을 첨부해서 계약자의 담당직원이 출장·확인 후 교환여부 결정하여 교환할 수 있다.

※ 교환시 소요되는 경비(비육 또는 폐돈출하시 비용), 분양후 교환시까지 소요되는 사육비용, 교환차량임차 등은 피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자“와 ”피계약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서에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가진다.

6. 외모, 지제 등 분양종축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축산생명연구원	(인)
농가대표(위임자)	(인)

(계 약 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

관 인 생 략

(피계약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종돈(육성돈) 인수 확인서

축종	품종	두 수			인수가격 (원)	분양종돈 개체번호
		암	수	계		
돼지 (육성돈)	계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 종돈(육성돈)분양 대상자가 직접 종돈(육성돈) 인수 불가 시 위임장 첨부해야 함.

상기와 같이 분양 돼지에 대한 성별, 품종, 수량 및 건강상태가 이상없음을 확인하여 인수합니다.

농장명:

농장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농장주:

(서명 또는 인)

차량번호:

기사성명: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 귀하

종돈(육성돈) 분양 약정서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서 생산된 육성돈(종돈 후보축)을 분양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장을 “계약자”라 하고, 분양받는 자를 “피계약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육성돈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1. 분양종돈 내역

품 종	두 수			분양가격 (원)	비 고
	암	수	계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두 록					
버 크 셔					

2. 육성돈은 양돈농가의 후보축 확보 등 안정적 양돈경영을 위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 시 이상유무 확인 후 인수 이후에는 교환이 불가함.
3. “피계약자”는 육성돈 인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분양당일 “계약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 2) 육성돈 인수에 따른 운송 및 부대경비를 전액 “피계약자”가 부담한다.
 - 3) 육성돈 인수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자“와 ”피계약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서에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가진다.

(계 약 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

관 인 생 략

(피계약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세자돈 인수 확인서

축종	품종	두 수			인수가격 (원)	매각돼지 개체번호
		암	수	계		
돼지 (거세 자돈)	계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 거세자돈 구입하는 대상자가 직접 거세자돈 인수 불가 시 위임장 첨부해야 함.

상기와 같이 분양 돼지에 대한 품종, 수량 및 건강상태가 이상없음을 확인하여 인수합니다.

농장명:

농장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농장주:

(서명 또는 인)

차량번호:

기사성명: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 귀하

거세자돈 매각 약정서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서 생산된 거세자돈을 분양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을 “계약자”라 하고, 거세자돈을 구입하려는 자를 “피계약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거세자돈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1. 거세자돈 내역

품 종	두 수			매각가격 (원)	비 고
	암	수	계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두 록					
버 크 셔					

- 거세자돈은 양돈농가의 비육출하 등 안정적 양돈경영을 위하여 저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분양 시 이상유무 확인 후 인수 이후에는 교환이 불가함.
- “피계약자”는 거세자돈 인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매각당일 “계약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 거세자돈 인수에 따른 운송 및 부대경비를 전액 “피계약자”가 부담한다.
 - 거세자돈 인수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자“와 ”피계약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약정서에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가진다.

(계 약 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

관 인 생 략

(피계약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종돈관리안내서

종모돈(♂) 세부관리 요령

- 구입한 종돈은 농장 도착 후 돈체 소독 실시
- 입식 후 3주이상 기존 돈군과 격리된 돈방에 수용
- 종모돈 입식시 실시사항
 - 입식 당일 사료는 급여하지 않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
 - 입식 2일째에는 구충제 투약 ◦ 사료량은 서서히 증가 시켜준다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정된 종돈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2주간 항생제 및 영양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승가훈련 및 번식공용 시기
 - 생후 7~8개월부터 승가훈련 시작
 - 발정기 후보모돈 또는 1산차 모돈을 활용하여 실시
 - 훈련시간은 15분 내외가 적당
 - 사용횟수는 9개월령 2주 1회, 10개월령 1주 1회, 11개월령 이후는 주 2회 실시
- 종모돈 예방접종
 - 돼지파보, 돼지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페렴, 위축성비염백신, 구제역백신 등

종빈돈(♀) 세부관리 요령

- 최소 240일령(135 ~ 150Kg) 이상에 교배하는 것을 목표
- 구입한 종돈은 농장 도착 후 돈체 소독 실시
- 입식 후 3주 이상 기존 돈군과 격리된 돈방에 수용
- 종빈돈 입식시 실시사항
 - 입식 당일 사료는 급여하지 않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
 - 입식 2일째에는 구충제 투약 ◦ 사료량은 서서히 증가 시켜준다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정된 종돈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2주간 항생제 및 영양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품종, 구입처, 구입체중, 생년월일, 초발정일 등 기록
- 180일령(105 ~ 110Kg)부터는 임신돈 사료 급여
- 종빈돈 예방접종
 - 돼지파보, 돼지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페렴, 위축성비염백신, 구제역백신 등

2) 돼지 액상정액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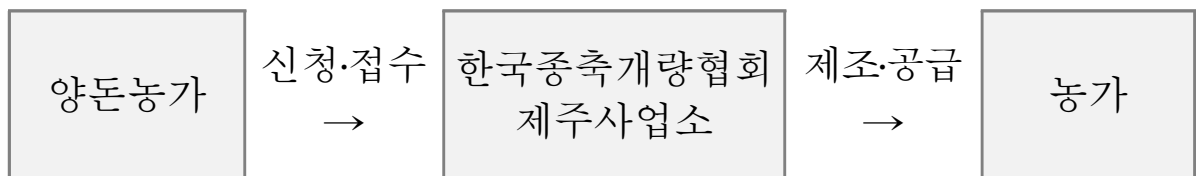
- 우수 씨돼지 액상정액 생산·공급을 통한 품종 개량 이바지
- 고능력 씨돼지 액상정액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나) 사업내용

- 사업비: 126,000천원(자체사업)
- 공급계획: 100,200팩(4품종: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다) 추진계획

- 생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공급: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 공급절차



- 정액신청: 농가 → 축산생명연구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 공급시간: (당일) 오전 신청 → (당일) 오후 공급
(당일) 오후 신청 → (익일) 오전 공급

- 공급가격(팩당): (농가 배달) 공급가 8,000원
(방문 인수) 공급가 7,000원

라) 액상정액 생산·공급 업무대행 계약

- 업무대행 업체: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 계약기간: `24. 8. 1. ~ `26. 7. 31.

3) 고능력 원종돈(GGP) 도입

가) 사업내용

- 사업비: 374,000천원(자체사업)
- 도입품종 및 두수
 - 3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60마리(암 50, 수 10)
- 종돈규격: 체중 50 ~ 70kg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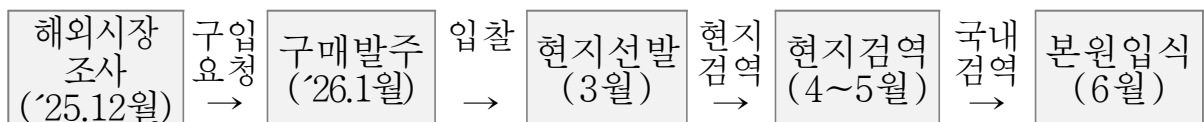
나) 추진계획

- 원종돈 선발 기준

- ❖ 일당증체량: (암) 950g 이상
(수) 1,050g 이상(랜드레이스, 요크셔), 1,000g 이상(두록)
- ❖ 등지방두께: 암·수 15mm 이하
- ❖ 유두수(좌/우): 7/7 이상(랜드레이스, 요크셔), 6/6 이상(두록)
- ❖ 총산자수: 13두 이상(랜드레이스, 요크셔), 9두 이상(두록)
- ❖ 도입 조건
 - 암돼지는 수출국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 이상 혈통등록을 필한 개체로 부모의 능력 선발기준을 충족할 것
 - 수돼지는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동복생존산자수, 사료요구율, 등심단면적 중 일당증체량과 등지방두께를 포함하여 3개 항목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것
- ❖ 해당 국가별 농림축산식품부고시(2023-2호)에 의거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 기준에 적합할 것

⇒ 능력, 혈통, 외모심사, 질병·사양관리 실태 및 개량 프로그램 등 종합 검토하여 우수종돈 선발

- 도입선(수입국): 캐나다 또는 미국
- 도입(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 수송·검역: 수입국 → 제주 → 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제주지역본부)



4) 종돈능력 검정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21,000천원(자체사업)
- 사업량: 1,200마리
- 관련근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82호('24. 10. 30)

나) 추진계획

- 고능력 씨돼지 선발을 위한 유전능력 평가
 - 105kg도달일령: 생시부터 105kg도달시까지의 일령
 - 등지방두께: 검정당일 초음파측정기 이용(3개 부위 평균값)
 - 일당증체량: 1kg(생시)부터 105kg도달시까지의 일당증체량
 - 등심단면적: 등심부위 초음파측정기 이용
- 종돈 능력 개량을 위한 우수 후보돈 선발
- 2025년 축산생명연구원 돼지 능력검정 결과

성별	구분	105kg 도달일령 (일)	일 당 증체량 (g)	등지방 두께 (mm)	등 심 단면적 (cm ²)	정육률 (%)
암	전국	157.2	659.8	13.8	33.8	59.5
	축산생명연구원	159.2	638.6	15.7	30.2	58.9
수	전국	149.0	719.0	13.6	35.0	60.3
	축산생명연구원	152.1	686.4	14.3	31.0	60.0
평균	전국	155.6	671.1	13.8	34.1	59.7
	축산생명연구원	156.8	656.7	15.2	30.5	59.3

5) 종돈장 시설개선사업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300,000천원(자체사업)
- 사업내용: 종돈장 노후시설 개보수

나) 추진계획

- 실시시설계용역 발주: 2026. 1월
-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착공 및 준공: 2026. 3월 ~ 12월

3 마필 산업 육성

가. 사업목적

- 국가지정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
- 국내 제주마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통한 난교잡 방지
-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마의 안정적인 종(種) 보존 및 경주능력을 고려한 계획교배
-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 활용 및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 대응을 위한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추진

다. 근거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및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동법 제6조(가축의 등록)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3건	1,349,997	455,000	894,997	
국가유산(제주마) 보존관리	1식	650,000	455,000	195,000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1식	431,620	-	431,620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1식	268,377	-	268,377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1) 국가유산(제주마) 보존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비: 650,000천원(국비 455,000 지방비 195,000)
- 사업량
 - 제주마(자마) 생산·분양: (생산) 46마리 → (분양) 35마리
 - 제주마 백신, 사료 구입 등

나) 추진계획

< 제주마 생산·분양 > (단위:마리)

구 분	계	암	수
생 산	46	23	23
후보축	11	9	2
분 양	35	14	21

- 매각대상: 생산자마 중 후보축 선발 후 잉여축 자마
- 매각시기: 2026년 하반기
 - ※ 매각예정일 기준 3개월령 미만 자마는 익년도 매각
-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분양 계획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 할 수 있음
 - 지역 축협 가축시장을 통한 위탁매각(가격 상한제 시행)
 - 제주마 공개경매 진행 시 유찰된 마필에 대하여 20%(2회) 기초가격 인하 후 추가 입찰 진행

○ 2026년 매각가격 (단위: 천원)

구 분	성 마		육성마		자 마	
	암	수	암	수	암	수
기초가격	1,500		1,200		700	
입찰상한가	4,500		4,500		3,600	

2)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비: 431,620천원(자체사업)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 모색, 외모 등을 고려한 천연기념물 제주마 선발 보존
- 경주능력이 우수한 마필 생산을 위한 무상 종부서비스 센터 운영
- 찾아가는 혈통등록 서비스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 제주마 입목 문화축제로 제주마의 우수성 대국민 홍보(방문객 40천명)

나)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관리

- 혈통등록: 씨수말과 등록된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망아지 등록
- 고등등록: 36개월령 이상의 성마로써 씨수말과 등록된 암말 사이에서 태어나 체형 및 외모심사 점수가 암말 80점 이상, 수말 90점 이상인 말
- 씨수말 지정: 혈통등록 된 3세이상 제주마 중 번식가능 수말
- 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 및 소유권 변경 등 원인 발생시
- 제주마 개체별 등록정보 제공, 무상종부서비스 신청
· 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 운영(<http://jejuhorse.jeju.go.kr>)

○ 제주마 및 승용마 무상 종부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6 2. ~ 6.
- 종부신청: 암말 보유자는 축산생명연구원에 1일 전 신청
- 종부횟수: 씨수마 마리당 1일 2회
- 종부조건 및 유의사항
 - 입식된 마필에 대한 사고책임은 위탁농가 부담
 -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허약축으로 판정시 입식 불가
 - 농가 교배전 질병 검사서 첨부 권고
 - 발정 및 임신여부 등 번식 관련 검사료는 농가 부담

다) 행정사항

- 제주마 혈통등록 신청시에는 소유자가 대상축을 축산생명연구원으로 이동하여 등록 신청. 종부증명서 제출 필수
- 씨암말 소유자는 종부서비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발급된 종부 증명서는 익년 혈통등록 신청시 제출

3)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가) 사업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3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사업비: 268,377천원

(민간위탁금 216,377 공공운영비 32,000 시설비 20,000)

○ 주요내용

-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말 순치·조련·생산 등) 제반사항
- 말 조련 거점센터(시설·장비·물품 등) 유지 및 안전관리 전반사항
- ※ 말조련 거점센터 수탁업자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

나) 행정사항

- 말 조련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26. 1. ~ '27. 12.

4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가. 사업목적

- 재래가축 고유 유전자원의 혈통 정립과 보존 관리체계 구축
- 재래가축의 안정적인 순수혈통 종(種) 보존 및 산업화 기반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재래가축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과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
- 보존목표: 제주흑돼지 250마리, 제주재래닭 600마리, 제주개 70마리

다. 근거법령

- 국가유산청훈령 제2호(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관리지침)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건	812,980	429,100	383,880	
재래가축 보존 생산 및 공급	2식	599,980	280,000	319,980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1식	213,000	149,100	63,9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1) 재래가축 보존, 생산 및 분양

가) 재래가축 보존 및 생산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비: 599,980천원(국비 280,000 지방비 319,980)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사업내용: 재래가축 고유 유전자원의 혈통보존 및 산업화

○ 보존방향

- 제주흑돼지: 종(種) 보존관리 및 유전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 제주재래닭: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지 및 기초 축군 관리
- 제 주 개: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순수혈통 고정

나) 재래가축 분양

○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 분양·매각 계획

(단위: 마리)

구 분	분양·매각 계획				
	계	1/4	2/4	3/4	4/4
제주흑돼지	150	35	40	35	40
제주재래닭	400	-	200	200	-

○ 분양(매각) 규격

- 제주흑돼지: 보존두수(250두) 초과 잉여축
 - 분양: 생후 60일령 이상, 농가 요청 및 학술연구 목적의 규격
 - 매각: 보존두수 초과 개체에 대해 분양 수요 없을 경우 비육 매각
- 제주재래닭: 종축 보존 외 잉여축 및 노령축

○ 분양(매각)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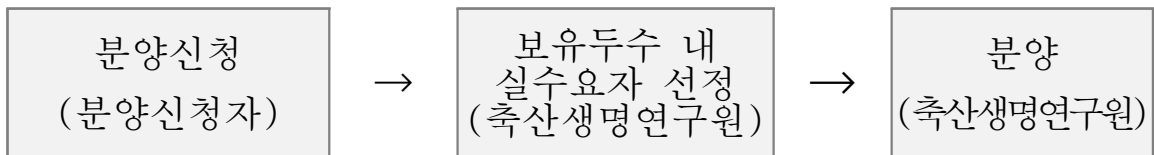
- 제주흑돼지: 돼지 사육 농가(250천원), 연구·실험(100천원)
 - ※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심의를 통한 분양가 결정
- 제주재래닭: 시가 조사결과에 의한 매각

○ 분양(매각) 대상

- 제주흑돼지
 1. 「축산법」 제22조 의거 축산업허가(등록)를 완료한 도내 돼지 사육농가
 2. 학술연구를 위한 실험축으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
 -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 외에는 분양금지
- 제주재래닭
 1.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 도내 닭 사육농가

2. 학술연구를 위한 실험축으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

- 분양(매각)시기: 자체분양계획에 의거 결정
- 분양(매각)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분양절차 및 방법
 - 분양희망농가: 분양 신청 및 접수
 - 축산생명연구원: 분양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분양대금 및 비용: 분양 당일 또는 이전까지 납부 후 개체 인수
- ※ 운송비 등 제반비용 일체는 분양대상자 부담



2)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비: 213,000천원(국비 149,100 지방비 63,900)
- 사업내용: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체세포, 생식세포 등) 수집 및 보존
- ※ 천연기념물(7종):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진도개, 삼살개, 동경이, 오골계

나) 추진계획

- 가축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관리(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등)
 - 축종별 체세포·생식세포(동결정액) 생산 및 보존
 -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7종 관리
 - 수집 유전자원 자체 품질검사 및 축종별 관리
 - 유전자원 정보, 특성조사 및 분석자료 등 데이터베이스화
 - 국내 가축 유전자원 보유 기관과 업무 협의 강화
 - 축양동물 유전자원 보존 실무협의회: 분기별
- (참석기관: 축산생명연구원, 국가유산청, 국립축산과학원, 삼살개재단)

5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기술보급 시범

가. 추진목표

-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을 통한 실용화로 축산 신기술 보급 등 생산성 향상
- 양축농가의 자질향상과 산업적 활용도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전문가 초빙을 통한 양축농가의 기술능력 배양 및 기술정보 제공
-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으로 신기술 보급 확대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담	
계	5건	324,914	145,000	148,000	31,900	
축종별 축산기술교육	1식	3,000	-	3,000	-	
수소 특이항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	1식	66,605	30,000	30,000	6,600	5개소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보급 시범	1식	155,402	70,000	70,000	15,400	2개소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1식	44,405	20,000	20,000	4,400	5개소
인공지능(AI)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	1식	55,502	25,000	25,000	5,500	2개소

라.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1) 축종별 축산기술교육

- 소 수정란이식 및 인공수정 기술교육
 - 소 번식 관련 신기술 이론 습득 및 현장 적용 실무 교육 등
- 돼지 인공수정 및 양돈장 사양관리 기술교육
- 생산자단체 등 수요자 요구에 따라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실시
- 종축개량, 유전자원 산업화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2)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

가) 사업목적

-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를 이용한 암소의 공태기간 단축 및 수태율 향상
- 신개념 탄소 저감 기술 보급으로 번식장애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국내개발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를 이용한 암소의 수태율 향상
- 암소의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 사용 없는 동물복지 축산 실천

다)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66,600	30,000	30,000	-	6,600	

※ 개소당 사업비: 13,320천원(국비 6,000 지방비 6,000 자부담 1,32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수소 특이향 블록, 컨설팅, 인공수정 관련기기 등
- 지원대상
 - 한우 번식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3 ~ 4개소
 - 젖소 착유우 30두 이상 사육농가(능력검정 참여 농가): 1 ~ 2개소
- 지원비율: 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축산생명연구원으로 신청서 제출
-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및 농촌지도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등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사업성과 및 농가소득 경제성분석 등 사업투입 효과 확인(2년간)

3)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보급 시범

가) 사업목적

○ 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저감시설을 통해 양돈농가의 효율적 냄새저감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냄새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냄새저감 시설을 통한 냄새민원 해소

다)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55,400	70,000	70,000	-	15,400	

※ 개소당 사업비: 77,700천원(국비 35,000 지방비 35,000 자부담 7,70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냄새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 세정식 냄새저감시스템 등

○ 지원대상: 돼지 1,000두 이상(액비순환시스템 운영농가 우선 선정)

○ 지원비율: 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축산생명연구원으로 신청서 제출

○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및 농촌지도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등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사업성과 및 농가소득 경제성분석 등 사업투입 효과 확인(2년간)

4)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가) 사업목적

- 케토시스 예방 기술 보급을 통한 분만기 안정적 젖소 사육기반 조성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분만기 젖소 농장에서 발생하는 케토시스 예방 기술 제공 케토시스로 인한 유량감소 등 예방 생산성 향상

다)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44,400	20,000	20,000	-	4,400	

※ 개소당 사업비: 8,880천원(국비 4,000 지방비 4,000 자부담 88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젖소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보조사료, 글리세린 등
- 지원대상: 젖소 착유우 30두 이상 사육농가(능력검정 참여 농가)
- 지원비율: 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축산생명연구원으로 신청서 제출
-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및 농촌지도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등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사업성과 및 농가소득 경제성분석 등 사업투입 효과 확인(2년간)

5) 인공지능(AI)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

가) 사업목적

- 한우 농장의 발정, 분만징후, 뒤집힘, 열질병 등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으로 노동력절감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축산업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상 징후 탐지 지능화 시스템 개발

다)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55,500	25,000	25,000	-	5,500	

※ 개소당 사업비: 27,750천원(국비 12,500 지방비 12,500 자부담 2,750)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업내용: 인공지능 기반 이상상황 탐지시스템, 인공수정 관련기기 등
- 지원대상: 한우 번식우 30두 이상이며 총 한우 100두 이상

※ 높이 6m 이상이고 면적 1,600㎡ 내외 축사 1개동 이상 보유

- 지원비율: 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축산생명연구원으로 신청서 제출
-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및 농촌지도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등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사업성과 및 농가소득 경제성분석 등 사업투입 효과 확인(2년간)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 실적보고서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회계검정 보고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소재지(주 소):

○ 전 화 번 호: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경비총액: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천원
- 자부담액: 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500 63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보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500 63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서식4 참고자료] 민간 보조비목·세목을 참고하여 작성
-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건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참고자료]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공공운영비(201-02)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행사운영비(201-03)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여비 (202)	국내여비(202-01)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업무여비(202-03)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재료비 (206)	재료비(206-0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207-01)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전산개발비(207-02)	·S/W개발비, 감리비
	시험연구비(207-03)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일반보전금 (301)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포상금 (303)	포상금(303-01)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401-0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 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감리비(401-02)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401-03)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행 사 관 련 시 설 비 (401-04)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자산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금 천원정()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원)

보조사업명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					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지방비	자부담금

- 지방비보조비율: (시도비: 시군구비:)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교 부 조 건

1. 「지방보조금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동일 기관 내 다른 부서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아.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침,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물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7.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및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9.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 지방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자부담통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0.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11.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2.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3.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②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③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하였을 때
 - ④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⑤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3. 14.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해야 합니다.
1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
16.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 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7.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18.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19.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20.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21.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3.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②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는 반드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6.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7. 지방보조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사 또는 회의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명	대표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8호서식]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		
교부 결정일			
사업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 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 ²)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 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 등기 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분	예산액 (교부조건)	%	집행액	%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비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 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내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계						
보 조 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 부 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 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 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 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정산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a)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b) 시도비 시군구비	자기부담금(c)	합계(d=a+b+c)	국고보조금비율 (e=a÷d)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f)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i=f+h)	수익금		
	전기 이월액(g)	집행액(h)		발생액(j)	반환액(k)	미반환액(l=j-k)

당기분 집행잔액 (m=d-f)	전기 이월 잔액 (n=g-h)	집행잔액 (o=m+n)	발생 이자 (p)	차기 이월액 (q)	반환 대상액 (r=o+p+k-q)	국고 보조금 반환액 (s)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t)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u=r-s-t)
							시도비	시군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VIII

축산관련 기관 단체

(2025년 12월 현재)

기 관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F A X	국 과	장 장	김 형 은 양 원 종	710 - 3020 710 - 2120
		축 산 정책 팀장	오 세 진	710 - 2121	
		축 산 환경 팀장	김 현 진	710 - 2291	
		말산업육성팀장	현 철 호	710 - 4831	
				710 - 2129	
	동물방역과 F A X	과	장	양 순 화	710 - 2660
		수 의 정책 팀장	김 주 아	710 - 2661	
		방역관리팀장	이 종 호	710 - 2151	
		동물복지팀장	김 경 호	710 - 2431	
		축산물위생팀장	문 성 환	710 - 2141 710 - 2669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진흥과 F A X	원 과	장	김 대 철 김 재 희	710 - 7930 710 - 7940
					710 - 7939
	가축자원과 F A X	과	장	김 준	710 - 7960 710 - 7969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방역진단과 F A X	원 과	장	문 성 업	710 - 8520
			장	강 완 철	710 - 8530
			장	정 경 주	710 - 8540
					710 - 8529
제 주 시	축 산 과 F A X	과	장	송 상 협	728 - 3400
		축 산 팀장	김 영 식	728 - 3401	
		동물방역팀장	고 영 건	728 - 3411	
		동물보호팀장	홍 권 필	728 - 3811	
		축산물위생팀장	김 현 주	728 - 3081	
		축 산 환경 팀장	현 병 일	728 - 3421	
		말산업육성팀장	고 지 훈	728 - 3891	
		양돈산업팀장	오 상 수	728 - 3841	
			728 - 3409		
	서귀포시	축 산 과 F A X	과	장	문 혁
청정축산팀장			송 영 훈	760 - 2781	
동물방역팀장			윤 정 식	760 - 2791	
축산물위생팀장			김 호 성	760 - 2661	
축 산 환경 팀장			강 훈 승	760 - 2801	
축 산 산업 팀장			박 현 미	760 - 2681	
동물보호팀장		현 미 진	760 - 6951 760 - 2789		

(2024년 12월 현재)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농협본부	농협경제제주 제주지역본부	고우일	제주시 서사로 56	720-1390	756-3814
	제주농축산지원단	임지호	제주시 서사로 56	720-1390	756-3814
제주축협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천창수	제주시 동문로 41	756-4201	758-4215
	축산물공판장	백동우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 215	799-5135	799-5139
	섬유질사료공장	김상범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796-1741	796-1743
서귀축협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김용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733-1471	733-3471
	T M F 조사료유통센터	박종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14번길 148-55	764-1475	764-1477
양돈협회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제주시 월랑로 26	729-7979	729-7950
	청정배합사료공장	양태호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111	772-7979	772-7900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이진호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31	729-7878	729-7800
	경제사업본부	고광립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27-2	796-7893	796-7895
	유통사업본부	김현실	제주시 월랑로 26	729-7979	729-7950
유기관	(사)한국축육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	채용혁	제주시 축산마을길 13	712-6637	712-6635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김남영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754-5700	754-5713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원광연	제주시 도리로 48(이호일동)	744-7691	744-769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한중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728-5203	728-5207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고경봉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728-5301	728-535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도본부	이성래	제주시 애월읍 고성1길 21-20	745-8480	
	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부	정호연	제주시 관덕로 13번길 9(3층)	758-0811	758-0812
한우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박창석	제주시 신비마을길 13	724-1053	724-1054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제주도지회	황호진	제주시 조천읍 목선동길 33	0-3693-2396	783-2396
낙농	한국낙농육우협회 제주도지회	이성철	제주시 첨단동길 160-20	727-2545	752-2545
	제주축협유가공공장	김상범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796-4245	796-0126
	주식회사 제주우유	김정옥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956	743-5100	794-5101
마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직무대리)	박승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001	786-8700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649-24	784-4230	782-4230
	제주마주협회	조경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595	749-6803
	제주마생산자협회	신성욱	제주시 선덕로 23 농어업인회관내	711-4436	711-4435
	한라마생산자협회	강동우	제주시 1100로 2805	743-9979	721-3888
	제주특별자치도승마장협의회	노철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595	787-3066	787-6366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	고성동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461	749-7859
양돈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제주시 월랑로 8길 1, 아란야플라자6층	744-4561	744-4562
	(사)제주흑돼지생산자회	김진욱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19	764-6055	764-8055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유통협의회	김성찬	제주시 신대로12길 51	724-9330	724-9330
	(사)청정제주돈육클러스터	하경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19	747-7032	794-7015
양계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회	한춘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42-7	782-0198	782-8104
	건강한닭영농조합	고경철	제주시 청풍남6길 15	755-3219	723-6662
	한라씨에프앤	이동규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99	784-6681	784-4646
	제주한라양계영농조합	김해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42-7	782-0198	782-8104
	제주웰빙영농조합	김봉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22	742-9947	743-9949
기타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	강방철	제주시 선덕로 23 농어업인회관내	711-4436	711-4435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김성진	제주시 남광로2길 49-25	756-9700	756-9710
	한국곤충산업협회 제주지회	강우영	제주시 조천읍 대흘남길 24	0-8662-5574	
	(사)한국흑염소협회 제주도지회	오진수	제주시 월평4길 78	0-3691-1039	